

발간등록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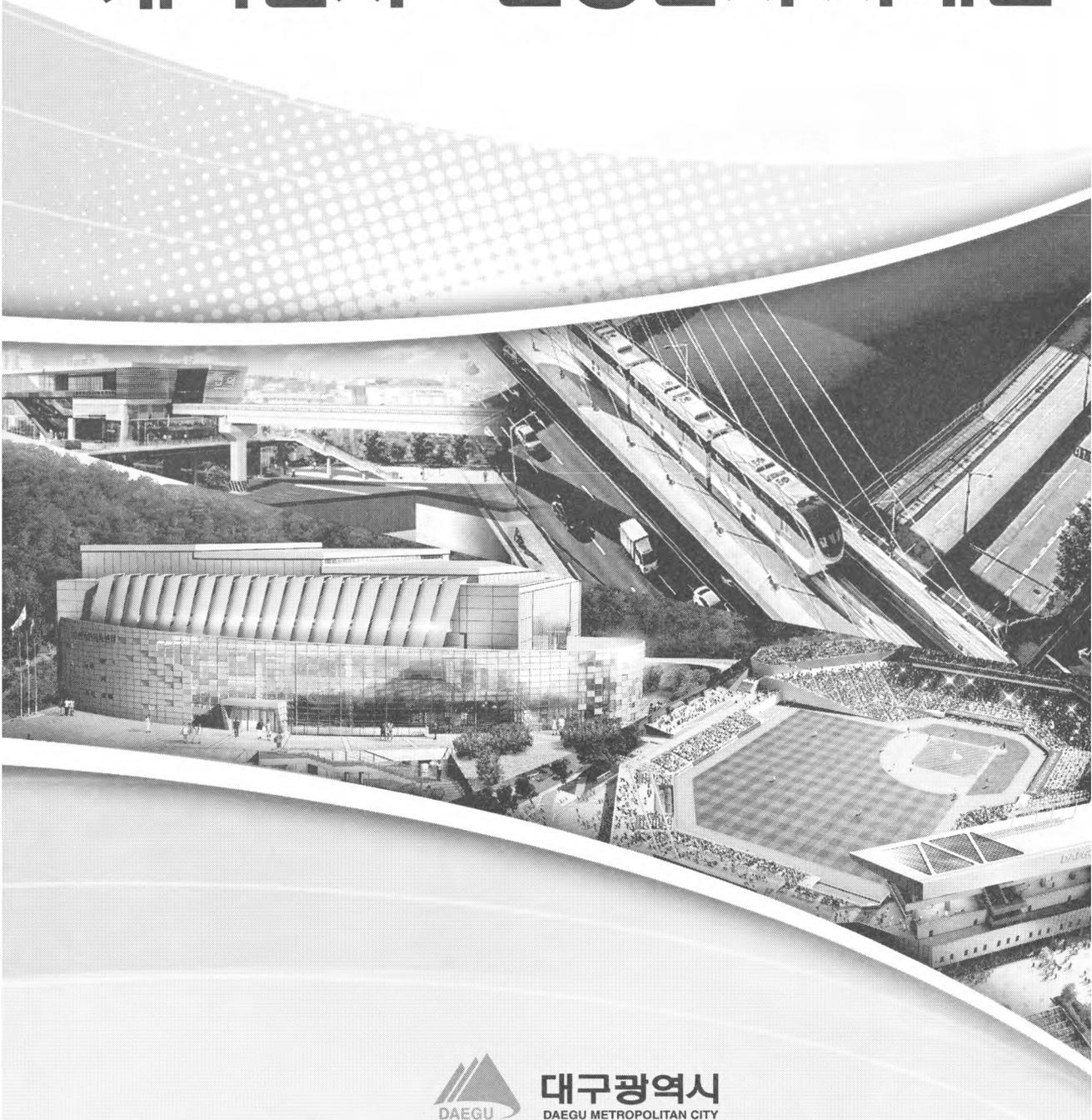
53-6270000-000345-10

희망의 도시

알류 대구

2014

계약심사 · 일상감사 사례집



대구광역시
DAEGU METROPOLITAN CITY



contents

I. 계약심사 운영개요 및 실적	5
○ 운영개요	7
○ 심사실적	9
II. 분야별 계약심사 사례	11
○ 공사분야	13
▪ 토목부문	19
▪ 건축부문	51
▪ 기계설비부문	63
▪ 전기부문	75
▪ 정보통신부문	87
○ 용역분야	93
▪ 기술용역	105
▪ 일반용역	117
○ 물품·제조 분야	127
○ 구·군 우수사례	147
III. 부 록	181
○ 대구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183
○ 예정가격 작성요령	197
○ 계약심사 운영요령	243



Chapter I 계약심사 운영개요 및 실적

1. 운영개요

2. 심사실적

1. 운영개요

가. 계약심사제 개념

발주부서에서 산출한 각종 공사·용역·물품 내역에 대해 원가심사 부서에서 거래실례가격조사, 현지 확인, 창의적 공법 도입 등을 통해 적정 원가를 산출하여 불필요한 예산의 절감과 발주부서의 설계능력 및 공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 특히, 계약심사 결과는 회계부서의 예정가격 작성을 지원하고 있음

나. 계약심사제 운영 근거

- 1) 지방재정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144조
-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3)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업무 처리지침』
- 4) 대구광역시 『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

다. 계약심사 대상기관 및 대상사업

대 상 기 관	심사내용	대 상 사 업
《시·사업소 등》 • 시 본청, 사업소 • 시 의회 사무처 • 지방공기업 • 출연·출자기관(50%이상)	• 원가심사	• 공사 : 추정금액 5억원(종합공사 이외 공사는 2억원) 이상 • 용역 : 추정금액 1억원 이상 • 물품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구·군》 • 국·시비 보조사업 • 국·시비 재배정 사업 • 자체예산중 요청사업	• 설계변경심사	• 계약금액 20억원 이상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라. 계약심사 제외 대상 사업

-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조달발주사업
-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하생략)

☞ 설계변경중 심사대상인 경우: { 계약금액(20억원이상)×10% } ≤ { 설변경후 증가액-계약금액조정액(물가변동,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 변경)-설계변경액(기본계획, 공법변경) }

3)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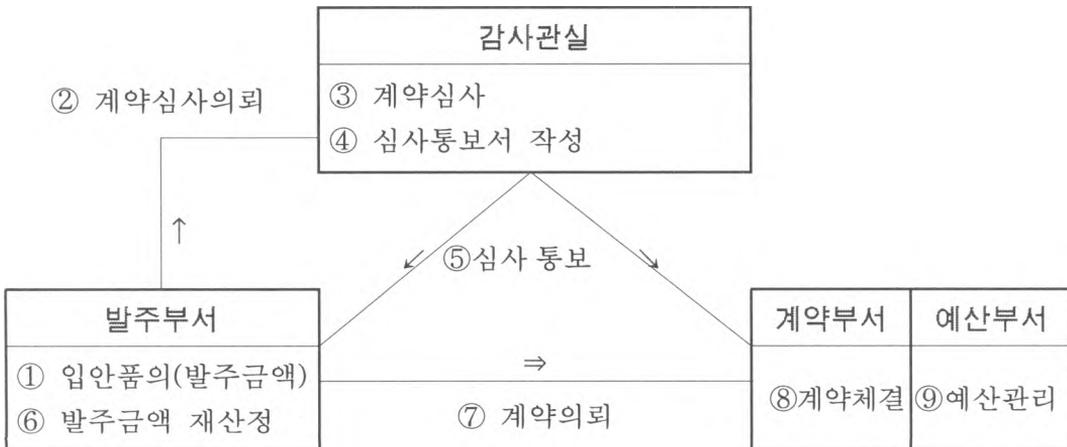
- 지방계약법시행령제25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의한 수의계약
- 시행령제43조의 협상계약
- 시행령제81조의 개산계약
- 시행령제95조의 일괄입찰
- 기타 예정가격 작성 곤란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중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안전행정부예규 제34호 2013.11.20)

4) 재해 및 재난복구사업으로서 긴급을 요하는 사업

- 시행령 제82조의 재해복구 공사의 개산계약

마. 업무흐름도



2. 심사실적

□ 분야별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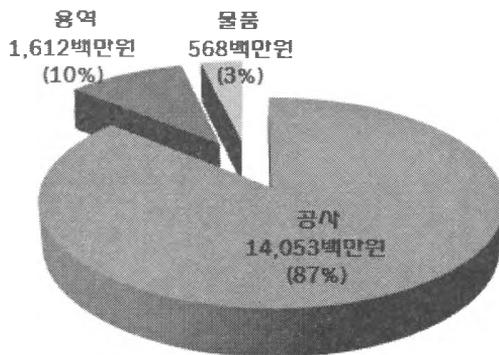
구 분	심사건수	심사 요청액	심사 조정액	절 감 액	절 감 률	비고
계	572	341,320	325,087	16,233	4.76%	
공 사	196	256,984	242,931	14,053	5.47%	
용 역	120	57,878	56,266	1,612	2.79%	
물 품	256	26,458	25,890	568	2.15%	

□ 기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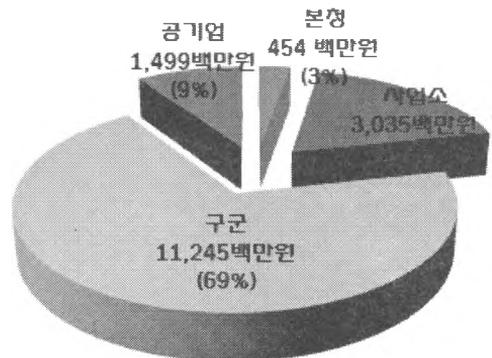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구 분	심사건수	심사 요청액	심사 조정액	절 감 액	절 감 률	비고
계	572	341,320	325,087	16,233	4.76%	
시	소계	229	122,290	118,801	3,489	2.85%
	본청	67	20,258	19,804	454	2.24%
	사업소	162	102,032	98,997	3,035	2.97%
구 군	173	155,557	144,312	11,245	7.23%	
공기업등	170	63,473	61,974	1,499	2.36%	

[분야별 절감]



[기관별 절감]



□ 연도별

○ 2011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심사건수	심사 요청액	심사 조정액	절 감 액	절 감 률	비고
계	598건	419,374	385,873	33,501	7.99%	
공 사	267건	318,555	289,723	28,832	9.05%	
용 역	153건	88,907	84,750	4,157	4.68%	
물 품	178건	11,912	11,400	512	4.30%	

○ 2012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심사건수	심사 요청액	심사 조정액	절 감 액	절 감 률	비고
계	508건	283,768	266,280	17,488	6.16%	
공 사	190건	183,848	167,975	15,873	8.63%	
용 역	123건	73,041	72,076	965	1.32%	
물 품	195건	26,879	26,229	650	2.42%	

○ 201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심사건수	심사 요청액	심사 조정액	절 감 액	절 감 률	비고
계	635건	444,762	423,098	21,664	4.90%	
공 사	238건	329,406	309,685	19,721	6.00%	
용 역	144건	91,551	90,105	1,446	1.60%	
물 품	253건	23,805	23,308	497	2.10%	

○ 2014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심사건수	심사 요청액	심사 조정액	절 감 액	절 감 률	비고
계	572건	341,320	325,087	16,233	4.76%	
공 사	196건	256,984	242,931	14,053	5.47%	
용 역	120건	57,878	56,266	1,612	2.79%	
물 품	256건	26,458	25,890	568	2.15%	



Chapter II 분야별 계약심사 사례

1. 공사

2. 용역

3. 물품 · 제조

4. 구 · 군 우수사례

공사분야

1. 토목부문
2. 건축부문
3. 기계설비부문
4. 전기부문
5. 정보통신부문

공사분야 계약심사

가. 공사의 분류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4호에 따라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 등으로 분류

나. 공사의 개념

1) 건설공사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2) 전기공사

전기공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의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

3) 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 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말하고, 정보통신설비는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器具)·선로(線路)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4)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증설·개설·이전 및 정비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

5) 기타공사

문화재 수리공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종합건설공사,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전문건설공사 등

다. 관련법령

- 1)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 2)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 3)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 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 5) 전기공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 6)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 7)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 8)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 9)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0)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
- 1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 1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 소음·진동 규제법
- 14) 지하수법
- 15) 하수도법, 시행령, 시행규칙
- 16)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1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1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19) 각종 예규, 고시, 지침 등
 -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국토교통부)
 -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국토교통부)
 - 설계감리 대가기준(국토교통부)
 - 측량대가의 기준(국토지리정보원)
 - 건축기계설비 설계기준(국토교통부)
 - 건축기계설비 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및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대가기준(국토교통부)
 - 지방자치단체의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자치부)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 20) 실거래가격적용 관련자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공표한 실적공사비
 - 조달청장이 공표한 가격정보

21) 설계관련 공통대가

- 자체 토목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이 있는 경우 관련자료
- 도로 및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설계지침 (건설행정부서)
- 상수도공사 일위대가(상수도관련 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공사발간 설계지침
- 시·군 건설공사 설계기준
- 견적에 의한 실거래가격
- 전문기관에서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물가정보, 물가자료, 유통물가, 거래가격 등

22) 노임단가적용 기준

- 건설업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 측량 노임단가(대한측량협회)
- 엔지니어링노임단가(한국엔지니어링협회)
- 감리노임단가(한국건설감리협회)

23) 제경비율 산출근거

- 조달청장이 공표한 제비율

24) 관련 법령에 의한 제비율

- 산재보험료율 등 고시
- 4대보험료율 적용기준 등

25) 품셈 등 적산 기준

- 표준품셈(토목, 건축, 기계, 전기, 정보통신 등)
- 건설신기술품셈(한국건설신기술협회)
- 조경공사 적산기준(조경사회, 대한건설협회 등), 공공기관 적산, 견적기준

라. 계약심사 의뢰시 구비서류

1) 전기공사(예시)

- 계약심사 요청서, 원가계산서
- 설계 설명서, 시방서
- 설계내역서(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포함)
- 비목별 기초계산서, 기계경비 산출서
- 기타 참고자료(방침서 또는 계획서, 견적서, 기술심사 등 보조자료)
-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도서(엑셀 내역파일, Auto Cad 도면)

마. 주요 검토사항

- 1) 실적공사비에 의한 원가계산의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 산출 여부
- 2) 4대 보험료 및 각종 경비 요율이 당해 고시요율로 적용되었는 지 여부
- 3) 중복공종 포함 및 부가세 중복 산정 여부
- 4) 내역서 수량 일치 여부, 노임할증 과다 여부, 단가적용 오류
- 5) 공사 진행상 불필요한 공종 포함 여부
- 4) 실제 작업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품셈 적용으로 과다계상 여부
- 5) 설계도서(시방서, 도면, 내역서, 일위대가, 단가조사서)간 일치 여부
- 6) 노임단가, 기계경비, 조달청 가격정보, 고재처리 등에 대한 적정단가 적용 여부
- 7) 제조노임, 수입자재 수입물품원가계산 적용여부

1. 토목부문

○○○급경사지 위험지구 개선공사

■ 규정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규정
-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0군 00면 0리 산00-0번지 일원
- 사업규모 : 급경사지 위험지구 정비 3개소
- 사업비 : 558,170천원
- 사업목적 : 비탈면에 보강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심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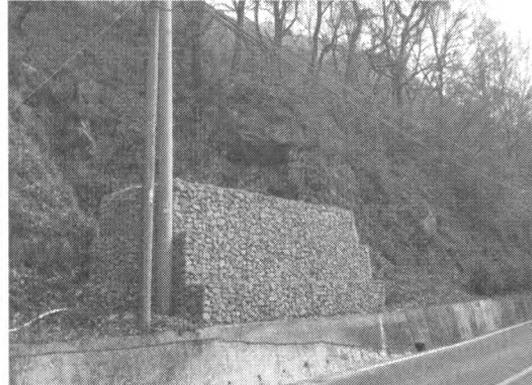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률(%)
558,170	424,261	△133,909	△23.99

■ 세부심사내용

- 용수발생으로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옹벽구조 변경
 - ▶용수발생 구간 주변보강으로 배수처리
 - ▶계단식옹벽 11m → 계비온옹벽 8m

- 옹벽 구조 변경으로 인한 비탈면 보강공 수량 조정
 - ▶천공 및 네일설치 700m → 201m, 지압판설치 70공 → 24공
 - ▶수평배수공 천공 및 삽입 150m → 89m, 다발판설치 15공 → 9공



(계단식옹벽 → 계비온옹벽)

심사포인트

- 현장여건에 맞게 조정 : No.140구간은 우기시 많은 양의 용수발생으로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옹벽구조 변경 및 이에 따른 토공량 조정

○○○일원 오수관거 설치공사(3차)

■ 규정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규정
-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0구 000동 일원
- 사업규모 : 오수관로 신설 D300mm, L=1,280m
- 사업비 : 803,600천원
- 사업목적 : 000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방류하천 수질환경 및 생활환경 개선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률(%)
803,600	701,679	△101,921	△12.68

■ 세부심사내용

- 현장여건에 맞는 배수공 수량 조정
 - ▶ 하수관 되메우기 시 관거 360° 모래부설 ⇒ 관거 180° 모래부설적용
 - ▶ 오수관로 관경을 계획오수량 및 최소유속 등을 감안하여 적정관경으로 조정(D300mm L=128m ⇒ D200mm L=128m)
 - ▶ 하수BOX내부에 오수관로는 보호콘크리트를 타설하므로 관거에 미치는 외압,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PE다중벽관에서 PE이중벽관으로 규격 조정 : D300mm L=306.6m, D200mm L=43.3m, D150mm L=18.7m

- 구조물공 수량 및 단가 조정
 - ▶ 맨홀뚜껑틀 설치품 무게비로 재산정
 - ▶ 암거내 관보호공 작업시 m²당 콘크리트치핑 공종 조정 :인력치핑⇒ 기계치핑

심사포인트

- 현장여건에 맞게 조정 : 모래부설, 오수관경, 오수관로 종류 등
- 관급, 사급자재대 수량 조정 : 모래, PE이중벽관 등

○○○ 골목 관광활성화 사업

■ 규정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규정
-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0구 000동 일원
- 사업규모 : 관광인프라 확충 1식
- 사업비 : 1,465,884천원
- 사업목적 : 관광 인프라 확충으로 도시 관광을 활성화하고 도심 역사자산에 대한 긍정적인 지역이미지 제고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률(%)
1,990,790	1,457,817	△532,973	△26.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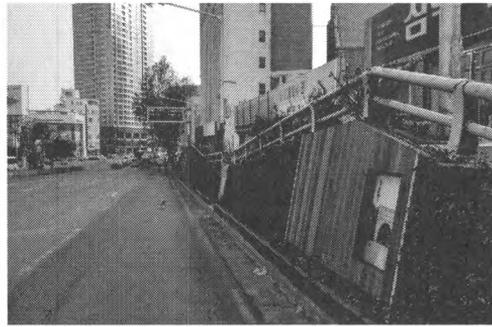
세부심사내용

○ 현장여건에 맞는 수량 및 단가조정

- ▶ 상태가 양호한 구간의 L형측구 존치
- ▶ 도로하부 구간의 기존 보조기층을 최대한 활용
- ▶ ○○○ 끝구간은 점토폐장 재활용 및 하부기초 상태가 양호하여 존치

○ 시설물공 수량 조정

- ▶ 빛의 하모니 조형물 양호하여 존치(이전비 제외)
- ▶ 「○○○○언덕 관광여건 정비」의 화장실이 양호하여 존치
- ▶ 「○○○다시그리기길」의 공연공간조성 및 골목방송국은 견적처리
⇒ 공종별 수량으로 산출



(옹벽 환경정비 단순화)

심사포인트

- 현장여건에 맞게 조정 : 양호한 시설물 존치, 견적처리→공종별수량으로 산출 등
- 관급, 사급자재대 수량 조정 : 아스콘, 황토콘크리트, 메쉬웬스 등

○○○1공원 조성공사 (3차)

■ 규정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규정
-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00구 000동 일원
- 사업규모 : 공원정비 L=930m
- 사업비 : 1,886,810천원
- 사업목적 : 폐선철도부지 공원화사업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인근주민 휴식공간 제공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율(%)
1,886,810	1,671,877	△214,933	△11.39

■ 세부심사내용

○ 현장여건에 맞는 수량 및 단가조정

- ▶수리계산에 따른 U형측구 적정단면 조정
- ▶교통량이 많은 2개소는 도로의 기능 및 향후 유지관리 등을 감안 점토폐장 ⇒ 기존도로(아스콘) 활용
- ▶교목식재시 성장속도를 감안하여 식재간격 조정(5m ⇒ 6m):메카세 퀘이아 127주 ⇒ 103주, 왕벚나무 137주 ⇒ 122주

○ 부대공 조정

- ▶현장여건에 맞게 PE안전휀스 설치 구간 조정 2,000m ⇒ 1,000m

심사포인트

- 현장여건에 맞게 조정 : U측구 적정단면 조정, 점토폐장→아스콘포장, 교목식재 간격조정 등
- 관급, 사급지재대 수량 조정 : 레미콘, 이형철근, 스틸그레이팅, 점토벽돌 등

○○○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 규정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규정
-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00구 000천 일원
- 사업규모 : 생태하천 복원 L=4.6km
- 사업비 : 7,998,322천원
- 사업목적 : 친환경 도심하천 복원 악취 등 시민불편사항 해소 및 녹색환경도시 이미지 제고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율(%)
7,998,322	7,197,683	△800,639	△10.01

세부심사내용

○ 현장여건에 맞는 수량 및 단가조정

- ▶ 하상준설이 불필요한 구간에 발생하는 토량을 하천둔치에 토량배분
- ▶ 저수로의 인위적인 시설물 설치계획 최소화 : 조경석쌓기 8,306㎡
⇒ 7,314㎡, 원통롤 설치 1,165㎡ ⇒ 406㎡, 자연사면 366m ⇒
1,087m, 방부말뚝박기 1,166개 ⇒ 407개
- ▶ 유지용수관로 매설시 안전성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조립식간이흙
막이 ⇒ 자연터파기공법
- ▶ 하천에 침수 및 유수에 적응력이 우수하고 대명천 자생종 및 유사한
종으로 조정

○ 부대공 조정

- ▶ 가설건물 규모를 현장여건에 맞게 조정(지역제한으로 숙소 제외)
- ▶ 가물막이를 설치구간 조정 및 물푸기는 자연배수가 가능한 구간 자연
배수 처리

심사포인트

- 현장여건에 맞게 조정 : 하상준설이 불필요한 구간 제외, 저수로 인위적 시설물 최소화, 유지용수 관로 매설시 안전성을 고려하여 자연터파기로 변경, 하천에 침수 및 유수에 적응력이 우수한 종으로 변경
- 가설건물 규모 조정, 자연배수가 가능한 구간은 자연배수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

☐ 규정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규정
-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0구 000동 000주변
- 사업규모 : 보행환경개선 A=167,000m²
- 사업비 : 2,700,370천원
- 사업목적 : 보행환경여건 개선으로 걷고 싶은 거리조성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률(%)
2,700,370	1,877,025	△823,345	△30.49

■ 세부심사내용

○ 배수공 수량 및 단가 조정

- ▶ 포장재질 변경에 따른 배수관로 구간 조정
- ▶ LU형 측구 70m + PE관 1,892m ⇒ LU형 측구 54m + PE관 1,902m
- ▶ 집수정 321개 ⇒ 326개소

○ 포장공 수량 및 단가 조정

- ▶ 차도블럭 포장 시공방법 조정 : 습식(몰탈기초) ⇒ 건식(모래기초)
- ▶ 차도블럭(자연석판석) 포장 수량 조정 : 7,621㎡ ⇒ 7,149㎡
- ▶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 : 12,403㎡ ⇒ 12,241㎡

○ 부대공 수량 및 단가 조정

- ▶ 표지판지주대 강판구멍뚫기 日당 작업량 조정 : 50개/日 ⇒ 500개/日
-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선유도시설 추가 설치 : 차선규제봉 4개,
반사지 4개
- ▶ 사급자재대 수량 및 단가 조정 : 보차도경계석 358개 추가반영 등

심사포인트

- 현장여건에 맞게 조정 : 배수관로, 차도블럭포장 시공방법, 시설유도시설 설치 등
- 관급, 사급자재대 수량 조정 : 보차도경계석, 그레이팅 뚜껑, 자연석판석 등

○○○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 규정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규정
-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0구 000동 000번지 일원
- 사업규모 : 오·우수관로(D200~400mm), L=1,377m
- 사업비 : 509,040천원
- 사업목적 : 생활환경과 수질개선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률(%)
2,700,370	1,877,025	△823,345	△30.49

■ 세부심사내용

○ 토공 수량 및 단가 조정

▶ 오수관로 관경 재조정에 따른 토공량 조정 : D300mm ⇒ D200mm

▶ 콘크리트 포장 절단 작업량 조정 : 4,277m ⇒ 1,220m

○ 오수관경 조정 및 오수맨홀 수량 조정

▶ 오수관로 관경을 계획오수량 및 최소유속 감안 적정 관경조정 :
D300mm, L=1,301m ⇒ D200mm, L=626.3m + D300mm, L=674.7m

▶ 맨홀간격 조정에 따른 수량 조정 : 46개소 ⇒ 42개소

▶ 우수처리를 위한 토사유출방지 포장 추가 : A=47㎡

○ 가시설공 수량 및 단가 조정

▶ PE웬스 설치 구간 조정 : 1,291m ⇒ 989m

▶ 중기 운반거리 조정 : 건설공사 표준품셈 10-1.3 참조

▶ 사급자재대 수량 및 단가 조정 : 측구수로관, 스틸그레이팅 추가반영

심사포인트

- 현장여건에 맞게 조정 : 오수관경, 맨홀, PE웬스 설치구간, 측구수로관 등
- 관급, 사급자재대 수량 조정 : 오수관로, 모래, 스틸그레이팅 등

○○오거리 하수본관 정비공사

■ 규정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규정
-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0구 00오거리 주변
- 사업규모 : 하수관거 설치(BOX 2.0x1.5~2.5x2.0), L=192m
- 사업비 : 1,037,440천원
- 사업목적 : 계획우수량에 의거 관경확대로 침수예방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률(%)
1,037,440	972,797	△64,643	△6.23

■ 세부심사내용

○ 토공 수량 및 단가 조정

- ▶ 오수관거 이설구간의 야간공사를 주·야간 병행 시공
- ▶ 아스콘깨기시 시간당 작업량(Q값) 조정 : 표준품셈 10-20. 2
- ▶ 톤마대 쌓기 및 헐기시 개당 설치단가 조정 : 표준품셈 5-3-1

○ 구조물공 수량 및 단가 조정

- ▶ 교통 혼잡을 최소화 하기 위해 조립식PC암거 설치 구간 조정 :
 $L=178.4m \Rightarrow L=191.8m$
- ▶ 조립식PC암거 설치구간 조정으로 간이흡막이 설치구간 수량 조정
- ▶ 조립식 간이흡막이 작업시간 및 인원 조정 : 2011년 원가분석 자문회의

○ 포장공 수량 및 단가 조정

- ▶ 오수관로 설치계획 변경(차도에서 인도)에 따른 포장재질 변경 :
아스콘포장 \Rightarrow 보도용 투수콘
- ▶ 중기 운반거리 조정 : 건설공사 표준품셈 10-1.3 참조
- ▶ 관급자재대 수량 및 단가 조정 : 조립식PC암거, 아스콘, 철근 등

심사포인트

- 현장여건에 맞게 조정 : 조립식PC암거, 간이흡막이, 포장재질 등
- 관급, 사급자재대 수량 조정 : 조립식PC암거, 아스콘, 철근, 순환골재 등

○○○○년 가로수 전정공사

■ 규정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규정
-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00구 00공단로 외30개 노선
- 사업규모 : 양버즘나무 외3종 2,768주 전정
- 사업비 : 207,000천원
- 사업목적 : 수목 전정으로 도시활력 증진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률(%)
207,000	176,000	△31,900	△15.34

■ 세부심사내용

- 수목 전정 단가 조정
 - ▶가로수 전정 단가 조정 : 전정품의 30% ⇒ 약전정의 80%
 - ▶노무비 추가 반영 : 2013년 상반기 노임단가 ⇒ 2014년 상반기 노임단가

○ 2014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4장 조경공사 참조

플라타너스 규격	2013년 품셈기준	2014년 품셈기준	단가 조정
B20cm	흉고직경 20cm이하	흉고11~21cm미만	전정품의 30% ⇒ 약전정의 80%
B25cm	흉고직경 21~25cm이하	흉고21~31cm미만	전정품의 30% ⇒ 약전정의 80%
B30cm	흉고직경 26~30cm이하	흉고21~31cm미만	전정품의 30% ⇒ 약전정의 80%
B35cm	흉고직경 31~35cm이하	흉고31~41cm미만	전정품의 30% ⇒ 약전정의 80%
B40cm	흉고직경 36~40cm이하	흉고31~41cm미만	전정품의 30% ⇒ 약전정의 80%
B45cm	흉고직경 45~45cm이하	흉고41~51cm미만	전정품의 30% ⇒ 약전정의 80%



(전전정 → 약전정으로 가지치기 조정)

심사포인트

- 가로수 전정 규격 및 단가 조정 : 2014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4장 참조
- 노무비 단가 조정 : 2013년 상반기 노임단가 ⇒ 2014년 상반기 노임단가

○○소하천 정비공사

■ 규정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규정
-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00군 00면 00리 000번지 일원
- 사업규모 : 하천정비 L=1.5km
- 사업비 : 1,035,380천원
- 사업목적 :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률(%)
1,035,380	851,819	△183,561	△17.73

■ 세부심사내용

○ 호안공 및 구조물공 수량 조정

- ▶ 교대구간에 접속부분 옹벽블럭 재설치 구간 조정 : 976m² ⇒ 840m²
- ▶ 무제부 구간 호안블럭 설치 추가 반영 : 82m²

○ 교량공 및 조경공 수량, 단가 조정

- ▶ 관급자재대에 현장설치비로 반영된 난간을 조정 :
현장도착도+설치비 별도인 제품으로 조정
- ▶ 전망데크가 현장여건상 전망이 불가하여 수량에서 제외
- ▶ 황토포장은 현장설치도인 제품으로 설치비용 제외

○ 부대공 수량 및 단가

- ▶ 환경보전비 반영과 중복적용된 오탁방지막 설치비용 제외
- ▶ 구조물 헐기(철근) 철근고재 계상 :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참조
- ▶ 기존 난간철거 단가 조정 : 잡철물제작설치 ⇒ 가드레일철거

심사포인트

- 원형데크 설치, 기존 난간철거 조정 : 2014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참조
- 전망데크, 황토포장, 남천식재, 개나리식재 등 수량 조정 : 현장과 상이

○○지구 오수관로 설치공사

■ 규정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규정
-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구 ○○동, ○○1,2,3동 일원
- 사업규모 : 오수관로 설치(D200~600mm) L=16.7km
- 사업비 : 15,297,600천원
- 사업목적 : 합류식 하수도를 분류식 하수도로 정비하여 위생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하수처리 효율증대 및 방류수역의 수질개선 효과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률(%)
15,297,600	13,773,864	△1,523,736	△9.96

■ 세부심사내용

○ 배수공 수량 및 단가 조정

- ▶ 계획오수량 및 최소유속 등에 대하여 수리계산후 적정관경 조정
 - 오수관(D300mm) 166m ⇒ (D250mm) 166m
 - 오수관(D500mm) 592m ⇒ (D450mm) 592m
- ▶ PE관 접합 및 부설시 m당 부설단가 및 공종 조정

○ 토공 및 포장공 수량 및 단가 조정

- ▶ 포장두께 산정시 동결심도 검토 후 동상방지층 2,080㎡ 제외
- ▶ 공사규모를 감안하여 토공작업시 인력투입비율 조정
- ▶ 되메우기 작업시 작업효율을 감안하여 장비 규격 조정
: 램머 + 플레이트 콤팩트 ⇒ 핸드가이드식 롤러

○ 가시설공 수량 및 단가 조정

- ▶ 조립식 간이흡막이 작업 인원 조정
- ▶ H-PILE+토류관 공종의 강판구멍뚫기, 볼트조이기 풀기 단가 조정

심사포인트

- 현장여건에 맞게 조정 : 계획오수량 및 최소유속에 대하여 수리계산후 적정관경 조정
- 간이흡막이공법 및 가시설공법을 원기분석 지문회의 결과 적용 등

○○길 조성 및 ○○골목 개선사업

▣ 규정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건설공사 표준품셈
- 대한건설협회 발표 시중노임단가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구 ○○동 및 ○○동 일원
- 사업규모 : 골목 개선사업 1식
- 사업비 : 1,097,371천원
- 사업목적 : ○○○○○○○길 및 ○○○골목의 가로환경을 개선하여 원도심의 재생과 관광 활성화에 기여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률(%)
1,097,371	1,026,649	△70,722	△6.44

세부심사내용

○ 토공 수량 및 단가 조정

- ▶아스팔트포장상태가 양호한 구간 철거 수량 조정
 - 아스팔트포장절삭 및 덧씌우기 620m² 제외
- ▶아스팔트포장깨기 및 노면절삭 등 토공수량 착오분 조정
- ▶아스팔트포장깨기 시간당 작업량 조정(Q=3.89m³/hr ⇒ 16m³/hr)

○ 포장공 수량 및 단가 조정

- ▶화강석판석포장시 m²당 작업투입인원 조정
 - 석공0.4인 + 보통인부 0.2인 ⇒ 석공0.1인 + 보통인부 0.2인
- ▶어린이보호구역에 미끄럼방지포장 278m² 누락분 추가반영
- ▶아스팔트포장절단 3,372m 누락분 추가반영

○ 자재대 수량 및 단가 조정

- ▶자재견적을 2인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실례가격 재조사 반영
- ▶동판자재대 및 집수받이 수량 누락분 추가반영

심사포인트

- 설계도서검토 및 현장확인후 누락된 수량을 현장여건에 맞게 조정 : 아스팔트포장깨기 등 토공작업 누락 수량 반영 및 과소적용된 작업량 조정
- 화강석판석포장 설치단가를 원가분석 자문회의 결과 적용 등

○○천 재해예방사업 (유지수 확보)

■ 규정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건설공사 표준품셈
- 대한건설협회 발표 시중노임단가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군 ○○읍 ○○리 일원
- 사업규모 : 송수관로 부설 L=2.45km, 펌프장 1식
- 사업비 : 5,889,809천원
- 사업목적 : 국토부 지방하천 정비사업 종합계획에 맞추어 유지수를 확보하여 생태환경조성 및 아름다운 하천으로 복원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률(%)
5,889,809	4,691,995	△1,197,814	△20.34

■ 세부심사내용

○ 관로공 수량 및 단가 조정

- ▶ 조립식 간이흙막이 m당 설치 단가 조정
- ▶ 현장여건에 맞게 잔디식재 방법 조정(평떼 ⇒ 줄떼)

○ 구조물공 수량 및 단가 조정

- ▶ 진입로, 경사로설치 옹벽구간의 철근가공조립 공종 조정(복잡⇒보통)

○ 기타공 수량 및 단가 조정

- ▶ 가동보주위 토공작업중 표토제거후 잔토처리를 하도록 되어있으나, 현장내 먼고르기(하상정지)로 조정

○ 부대공 및 자재대 수량 및 단가 조정

- ▶ 직접노무비 금액(9~30억원)에 맞게 가설건물 규모 조정
- ▶ 중복 반영한 자재는 내역에서 제외

심사포인트

- 현장 확인 후 정비가 완료된 구간의 하천 준설공종 제외
- 현장 여건에 맞게 불필요한 작업공종 조정 및 기존시설물 재활용
- ○○교 상류지역 오염원을 차집관로로 유도하는 계획은 차기 사업추진으로 제외

○○천 ○○로○○길 일원 오수관거정비공사

■ 규정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건설공사 표준품셈
- 대한건설협회 발표 시중노임단가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구 ○○동 일원
- 사업규모 : 오·우수관로(D200~1,200mm) L = 1,385m 정비
- 사업비 : 1,762,900천원
- 사업목적 : 하수관로를 우·오수분리 설치로 인하여 하수처리 효율증대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 주거환경 개선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률(%)
1,762,900	1,508,358	△254,542	△14.44

■ 세부심사내용

○ 토공 수량 및 단가 조정

- ▶ 기존 우수관로에 유입되는 신설우수관 매설깊이 조정
- ▶ 관하단 모래부설 두께 조정에 따른 모래수량 조정
- ▶ 도로작업여건에 맞게 포장절단 日당 작업량 조정
- ▶ 아스팔트포장깨기 시간당 작업량 조정($Q=5.9\text{m}^3/\text{hr} \Rightarrow 16\text{m}^3/\text{hr}$)

○ 배수공 수량 및 단가 조정

- ▶ 계획오수량 및 최소유속 등에 대하여 수리계산후 적정관경 조정
(D300mm \Rightarrow D200mm)
- ▶ 설계내역과 도면이 상이한 부분 수정
 - 흙관(D400mm) 1,279m + (D500mm) 51m
 - \Rightarrow 흙관(D300mm) 291m + (D400mm) 955m

○ 가시설공 수량 및 단가 조정

- ▶ 원활한 현장관리를 위하여 야간공사를 주간공사로 일부 조정
- ▶ 잔토소운반(야적장운반)시 도로폭 및 작업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서 잔토처리가 가능한 구간 조정

심사포인트

- 현장여건에 맞게 조정 : 계획오수량 및 최소유속에 대하여 수리계산후 적정관경 조정
- 설계내역과 도면이 상이한 부분 조정

○○○네거리 명품가로공원 조성공사

■ 규정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건설공사 표준품셈
- 대한건설협회 발표 시중노임단가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구 ○○동 ○○○-○○번지 일원
- 사업규모 : 공원정비공사 A=4,000m²
- 사업비 : 1,336,538천원
- 사업목적 : ○○○네거리의 불량경관을 쾌적하고 젊음이 있는 미래 지향적인 가로공원으로 조성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률(%)
1,336,538	1,188,686	△147,852	△11.06

■ 세부심사내용

○ 포장공 수량 및 단가 조정

▶ 현장여건에 맞게 포장재질 및 수량 조정

- 사괴석포장 298㎡ ⇒ 아스콘 표층 포설 516㎡
- 투수블럭포장 1,297㎡ ⇒ 스톤블럭포장 1,351㎡

▶ 화강석판석포장시 ㎡당 작업투입인원 조정

- 석공0.4인 + 보통인부 0.2인 ⇒ 석공0.1인 + 보통인부 0.2인

○ 시설물공 수량 및 단가 조정

▶ 상징분수 구조물의 STS강판 단가 적용 오류 조정

- STS강판(3T) 1,750,000원/㎡ ⇒ 83,300원/㎡

▶ 시설물에 대한 자재견적을 2인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실례 가격 재조사 반영

▶ 토크판매부스를 이전하여 새로이 설치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민간개인이 설치한 시설물이므로 이설위치만 지정

○ 기계설비공 수량 및 단가 조정

▶ 조형분수 및 상징분수의 펌프용량 및 작업인원 등 조정

심사포인트

- 현장여건에 맞게 포장재질, 수량 및 작업투입인원 조정
- 시설물에 대한 자재견적을 거래실례가격 재조사 반영

2. 건축부문

○○석탑주변 정비사업

■ 규정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규정
-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0구 00사1길
- 사업규모 : 문화재공사
- 사업비 : 368,560천원
- 사업목적 : 문화재 주변 개선공사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률(%)
368,560	349,450	△19,110	△5.19

■ 세부심사내용

- 문화재 가설공사 단가조정
 - ▶ 가설덧집등 손율을 3개월로 조정
 - ▶ 현장정리비를 철근콘크리트조 ⇒ 목조로 조정

- 목공사중 단가조정
 - ▶ 박공판, 연개판, 착고판의 부연치목을 인력 ⇒ 기계

심사포인트

- 문화재 표준품셈 맞게 조정 : 가설공사, 목공사의 치목설치등
- 현장조건, 공사조건 시공의 적적성여부등 기타조정

○○시장 프렌차이즈 특화거리

■ 규정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규정
-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0구 달서로 30길6 일원
- 사업규모 : 개보수공사 및 기타공사 각1식
- 사업비 : 766,487천원
- 사업목적 : 침체된 전통시장의 활성화 사업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률(%)
603,471	551,646	△51,825	△8.59

■ 세부심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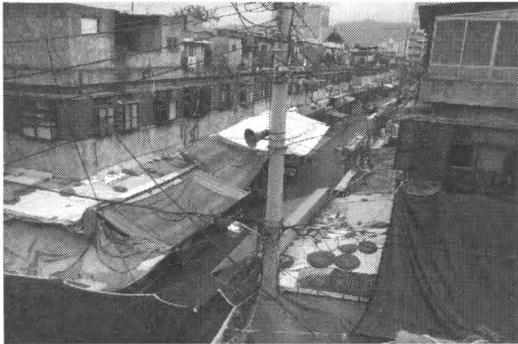
- 주변환경여건, 공사조건 및 설계경제성(V.E)검토
 - ▶ 외부쌀줄비계를 틀비계로 조정
 - ▶ 두께1.2T 갈바름 강판설치는 0.8T로 변경(현장절곡 및 가공을 고려)

○ 습식공사를 건식공법 변경

▶40년이 지난 건축물로 내구성 부족과 철근콘크리트 중성화 현상등 건축물 내·외벽에 철근부식, 몰탈 탈락등 현상과 옥상 방수층 파괴로 누수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음 습식공법은 누수상태의 근본적인 해소없이 시공될 경우 많은 문제점 발생 우려하여 공기단축 등 품질관리를 위하여 건식공법으로 변경

○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수정

▶각 공정별로 내용을 시공방법, 절차, 허용오차, 사용자재, 재료의 특성등 기타사항을 현장여건에 맞게 공정순서대로 수정



(건축 : 습식공법 → 건식공법 변경)

심사포인트

- 공기단축, 사업비의 적정성의 여부를 검토하여 습식공법을 건식공법으로 변경
- 현장조건, 공사조건 시공의 적적성여부등 기타조정

○○센터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 규정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규정
-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0구 0국채보상로 000
- 사업규모 :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 사업비 : 3,368,144천원
- 사업목적 : 기존건물의 리모델링화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도모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률(%)
2,922,396	2,797,584	△124,812	△4.27

■ 세부심사내용

- 내구성이 결여된 외벽타일공사 조정
 - ▶백화현상방지와 빗물침투 방지를 위하여 발수제도포 또는 코팅 처리를 하여 유지관리 향상도모

- 옥상방수 단가조정
 - ▶기존철거, 바탕처리 물량이 과다하게 산정 현장조건에 맞게 조정

- 공기단축을 위하여 철거공사 최소화조정
 - ▶각층복도, 계단 기존테라조 타일철거등을 최소화 하여 공기단축 및 예산절감 효과

심사포인트

- 기존 건축물의 철거, 마감공사등은 최소화하여 공기단축 도모
- 현장조건, 공사조건 시공의 적적성여부등 기타조정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 규정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규정
-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0구 00사1길
- 사업규모 : 신축공사
- 사업비 : 6,862,469천원
- 사업목적 : 국민체육증진 및 체력향상 도모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률(%)
4,974,566	4,918,612	△55,954	△1.12

■ 세부심사내용

- 내구성 및 압축강도가 우수한 석공사재료 채택
 - ▶ 바닥재인 현무암은 강도가 부족하여 시공적인 편마모, 탈락현상 발생
 - ▶ 유지관리가 우수한 화강암변경
 - ▶ 외부 출입자의 미끄럼 방지를 위하여 표면처리를 잔다듬 채택

- 녹색구매 제품 채택
 - ▶ 실내 관람석 에폭시 코팅은 환경저해 요인이므로 친환경제품 변경

- 외벽 단열재 부착공법 검토
 - ▶ 열손실방지를 위하여 단열재 부착공법이 기밀성, 공기층 형성, 정밀도 및 접합부등을 고려하여 일체식공법 검토

심사포인트

- 내구성, 유지관리상에 적합한 제품선정등
- 현장조건, 공사조건 시공의 적적성여부등 기타조정

○○교회 보수공사

■ 규정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규정
-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0구 00로 00번지
- 사업규모 : 문화재공사
- 사업비 : 280,200천원
- 사업목적 : 문화재 개선공사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률(%)
280,200	278,171	△2,029	△0.72

■ 세부심사내용

- 문화재 가설공사 단가조정
 - ▶ 강관비계공 공량수(0.09 ⇒ 0.075) 조정
 - ▶ 공구손료(5% ⇒ 3%) 조정

- 문화재 시설로써 기존치장벽돌의 백화, 백태현상방지
 - ▶ 외벽 담쟁이 넝쿨 제거후 기존벽돌의 백화, 백태현상 방지

심사포인트

- 문화재 표준품셈 맞게 조정 : 가설공사의 단가조정
- 현장조건, 공사조건 시공의 적정성여부 등 기타조정

3. 기계설비 부문

○○○ 배관교체공사

■ 규정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규정
-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구 ○○시장 내
- 사업규모 : 소방 설비공사 1식
- 사업비 : 390,000천원(국비 234,000 시비 58,500 구비 58,500 민자 39,000)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간
- 사업목적 : 노후시설 보수로 안전한 쇼핑공간 조성 및 전통시장 활성화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률(%)
371,000	324,544	△46,456	△12.52

■ 세부심사내용

○ 현장여건을 고려한 내역조정 등

- ▶ 스프링클러헤드 플렉시블조인트는 현장여건에 맞게 1.5m에서 1.0m로 조정
- ▶ 플렉시블조인트 가격에 포함된 헤드 체결용 와서는 내역에서 삭제
- ▶ 천장텍스 탈·부착 공정에서 철거가 불가능한 천장텍스 수량 내역에서 삭감
- ▶ 산정 근거를 명시하지 않고 내역에 반영한 공구손료 및 잡 재료비 삭제

○ 일위대가 오류 수정 등

- ▶ 천장 석고보드 신설: 건축목공 0.65인+보통인부 0.65인 → 건축목공 0.078인
- ▶ 비닐페인트칠: 도장공 0.852인 → 0.057인

심사포인트

- 플렉시블조인트 부속품 가격의 중복적용 여부 판단
- 천장텍스는 현장에서 탈·부착이 가능한 지 여부 판단

○○○도서관 건립 기계설비공사

■ 규정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규정
-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구 ○○동 ○○○○번지
- 사업규모 : 기계 설비공사 1식
- 사업비 : 1,894,000천원(국비 800,000 시비 600,000 구비 494,000)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간
- 사업목적 : 공공도서관 확충으로 다양한 지식과 정보 및 문화 서비스 접근기회 확대도모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률(%)
203,230	185,143	△18,087	△8.9

■ 세부심사내용

- 품셈기준 및 현장여건을 고려한 내역조정 등
 - ▶ 엘리베이터용 배수펌프는 사용빈도를 감안하여 예비펌프 1o 삭감하고, 전기레벨스위치는 삭제
 - ▶ 유아열람실 화장실 환기배관은 처짐을 고려하여 플렉시블 제품에서 P.V.C제품으로 재질변경
 - ▶ 천장형가습기는 초기투자비 대비 경제성이 떨어지고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미반영
- 원가계산 효율 조정
 - ▶ 산재보험료 효율 조정: 노*3.7% → 노*3.8%

심사포인트

- 엘리베이터용 배수펌프의 법적 설치기준 및 예비펌프 필요 여부 판단
- 천장형가습기 설치에 따른 타 제품과 경제성(효과) 및 유지관리비 검토

○○○센터 건립 기계설비공사

■ 규정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규정
-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구 ○○동 ○○○○번지
- 사업규모 : 기계 설비공사 1식
- 사업비 : 11,146,000천원(기금 3,100,000 구비 5,446,000 지방채 2,600,000)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간
- 사업목적 : 다목적 공간의 공공체육시설 건립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률(%)
959,638	893,718	△65,920	△6.87

세부심사내용

- 관련법령 준수 및 현장 여건을 고려한 내역조정 등
 - ▶ 온수저장탱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급을 관급으로 조정
 - ▶ 화장실 환기덕트 재질을 아연도강판에서 P.V.C제품으로 변경
 - ▶ 화장실 천장형온풍기는 외기의 영향이 적으므로 4대 삭감
 - ▶ 1층 로비의 G.H.P(3대)는 불필요 삭감(주 출입구는 지하1층)
 - ▶ 2층 공기순환용 팬은 기류가 중복되는 구역의 팬 재배치로 1대 삭감
 - ▶ 내역 및 일위대가에 반영된 공구손료와 잡 재료비는 현장에 필요한 비용에 한해서만 적용
- 공량오류 수정 등
 - ▶ 팬 설치공량 오류 수정
 - 급·배기팬(SF-1, EF-9): 기계설비공 6.4인 → 0.6인
 - 급·배기팬(SF-2, EF-2,3,4,5,6): 기계설비공 1.8인 → 0.5인
 - 배기팬(EF-10): 기계설비공 0.3인 → 0.13인
- 자재단가 조정
 - ▶ 가스미터 외 7종 단가 조정
 - ▶ 안전관리비율 수정: (재+직노)*1.86%+5,349천원→(재+직노)*2.93%

심사포인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반영 및 에너지절감 효과와 필요성에 따른 설비의 설치여부 판단
- 현장여건에 적정한 자재(재질) 반영 여부 검토

○○ 국민체육 센터 건립 기계설비공사

■ 규정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규정
-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구 ○○동 ○○○○번지
- 사업규모 : 기계 설비공사 1식
- 사업비 : 6,450,000천원(국비)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간
- 사업목적 : 가정법원 후적지를 활용하여 지역 리사이클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률(%)
649,285	593,520	△55,765	△8.59

▣ 세부심사내용

- 현장 여건을 고려한 내역조정 등
 - ▶ 각층에 설치한 수도미터는 임대시설에만 설치하도록 2개 삭감
 - ▶ 복도 냉난방기(12대) 및 홀의 전열교환기(2대)는 사용빈도, 경제성을 고려하여 삭감
 - ▶ 가스 입상관은 미관을 고려하여 본 건물과 증축건물 중간으로 위치변경
 - ▶ 급수펌프는 기구 수에 의한 계산법에서 순시최대사용량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펌프용량 하향조정
 - ▶ 내역 및 일위대가에 반영된 공구손료와 잡 재료비는 현장에 필요한 비용에 한해서만 적용
- 공량오류 수정 등
 - ▶ 모래갈기: 자재할증률 조정(품셈기준 적용: 20%→ 6%)
 - ▶ 위생도기 철거공량 요율 조정: 60% → 40%
- 자재단가 조정
 - ▶ 경유 외 12종 단가 조정

심사포인트

- 에너지절감 효과 여부에 따라 설비의 설치필요성 판단
- 품셈기준 반영여부 검토

○○회관 건립 기계설비공사

■ 규정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규정
-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군 ○○면 ○○○○번지
- 사업규모 : 기계 설비공사 1식
- 사업비 : 2,635,000천원(국비 500,000 자부담 2,135,000)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간
- 사업목적 : 보훈대상자와 가족에 대한 예우 및 사기진작, 보훈
단체 간 상호교류 증진으로 보훈의식 고취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률(%)
318,258	294,099	△24,159	△7.59

■ 세부심사내용

- 현장 여건을 고려한 내역조정 등
 - ▶ 급수펌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급을 관급으로 조정
 - ▶ 급수배관은 임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고려하여 각 층별로 분리하고 수도미터 2개소 추가설치
 - ▶ 배수펌프 가대는 불필요하여 삭제하고, 옥상 통기관은 플랜지 마감을 추가
 - ▶ 내역 및 일위대가에 반영된 공구손료와 잡 재료비는 품셈기준에 따라 적용
- 공량오류 수정 등
 - ▶ 급·배기 팬 공량수정(D=200): 기계설비공 0.5인 → 0.3인
- 자재단가 조정
 - ▶ 바닥배수구 외 5종 단가 조정

심사포인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급대상 여부검토
- 운영상 필요한 시설 여부 검토

4. 전기부문

○○골목 관광활성화 사업 전기공사

■ 규정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규정
- 조달청 가격정보 및 시중거래 조사가격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0구 000동 일대(0000) 및 00동 일대(0000)
- 사업규모 : 근대골목 트레일 조성 및 환경개선(가로등 설치 및 조명) 1식
- 사업비 : 231,852천원
- 사업목적 : 관광 인프라 확충으로 도시 관광을 활성화하고 도심 역사자산에 대한 긍정적인 지역이미지 제고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률(%)
231,852	208,397	△23,455	△10.12

■ 세부심사내용

○ 현장여건에 맞는 공종 및 내역 조정

- ▶ 실내 조명기구 광각형으로 선정 및 기구 취부후 분체도장 마감처리
- ▶ 전원공급 선로포설 경로 변경 및 매설깊이(60=>120cm) 조정 적용
- ▶ 야외공연장 경관조명등 자재 선정 지역조달청 등록된 우수제품 구매
- ▶ 터파기 및 아스팔트 깨기 구간 적합한 장비사용 및 수목식재 구간 다짐 및 잔토처리 제외
- ▶ 분전반 및 전원공급용 판넬 구매시 제조원가계산 조정
- ▶ 빛의 하모니, 청라언덕 전망대 화장실 내역 제외

○ 설계내역에 맞는 일위대가 조정

- ▶ 파상형 경질 PE전선관(ELP40,50mm) : 동시포설(2열,3열)품 적용[전품 4-31]
- ▶ 0.6/1KV 난연케이블 4C(2.5SQ,10SQ,16SQ) : 가로등 할증품 제외[전품4-34]
- ▶ 벽관통 구멍파기(21cm이하) : 콘크리트 블록벽은 50% 적용[전품 5-29-1]
- ▶ 전선관(HI16C,22C,28C,42C,ST36C) : 옥외 지중 매설품 적용[전품 4-29]
- ▶ 가로등 다기능 접속함(ELB내장) : 내선전공 0.133인 => 0.12인[전품 5-3]
- ▶ LED바닥조명(1.8W 단방향) : 내선전공 0.155인 => 0.111인[전품 5-25-1]
- ▶ 옥외 계량기함(300W*400H*180D) : 내선전공 0.66인 => 0.45인[전품 5-21]

심사포인트

- 현장여건에 맞게 조정 : 실내 조명기구, 전원공급 선로포설, 보안등주 높이, 야외공연장 경관조명등, 분전반 및 전원공급용 판넬 등
- 설계내역에 맞는 일위대가 조정 : 파상형 경질 PE전선관, 0.6/1KV 난연케이블 4C, 벽관통 구멍파기, 전선관, 가로등 다기능 접속함, LED바닥조명 등

○○○건설 전기공사

■ 규정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규정
- 조달청 가격정보 및 시중거래 조사가격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00동 00로 ~ 000
- 사업규모 : 수배전설비 공사 외 2종 1식
- 사업비 : 1,815,850천원
- 사업목적 : 교통개선 및 차량의 안전운행 도모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률(%)
1,815,850	1,780,375	△35,475	△1.95

■ 세부심사내용

○ 현장여건에 맞는 자재 및 물량 조정

- ▶ 터널 입구부 지중터파기 공종 변경 : 암반 => 보통토사(깊이 60cm이상)
- ▶ 수배전반 설비 설치 후 유지관리를 위한 예비품 필수적인 부품만 구입
- ▶ 교통신호기(제어기, 신호등)를 관급으로 분류 구매 조정

○ 설계내역에 맞는 일위대가 및 공량 조정

- ▶ 파상형 전선관(ELP 100,150, HI 22C, 36C) 매설공정 동시배열품 적용
[전품 4-29, 4-31]
- ▶ 0.6/1KV 트레이용 케이블(F-CV 10SQ, 25SQ), 내화케이블(F-FR-8 25SQ)설치 동시배열품 적용[전품 4-34]
- ▶ 벽관통 구멍파기(21cm이하) : 콘크리트 블록벽은 50% 적용[전품 5-29-1]
- ▶ 내화전선(F-FR-8 35SQ/4C)설치 : 저압케이블공0.036인=>0.084인[전품 5-25]
- ▶ 다기능접속함(ELB내장,단자접속용)설치:내선전공0.133인=>0.12인[전품 5-4]

심사포인트

- 현장여건에 맞는 자재 및 물량 조정 : 지중터파기, 예비품, 교통신호기 관급 조정 등
- 설계내역에 맞는 일위대가 및 공량 조정 : 파상형 전선관, 동시배열품 적용, 벽관통 구멍파기, 내화전선, 다기능접속함 등

○○○ 보건복지센터 건립 전기공사

■ 규정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규정
- 조달청 가격정보 및 시중거래 조사가격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00구 00동 000-0 번지선
- 사업규모 : 지하1층 / 지상4층 전기설비 1식
- 사업비 : 585,955천원
- 사업목적 :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보건인프라 구축 및 복지수요 충족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률(%)
585,955	565,308	△20,647	△3.5

■ 세부심사내용

○ 현장여건에 맞는 자재 및 물량 조정

- ▶한전 전기인입선로 예비선로 제외
- ▶시중 물가자료 중 조달청 공통시설자재단가와 비교하여 시공에 적합한 단가 적용
- ▶옥외 보안등주 재질을 스테인레스에서 철재로 변경
- ▶고효율 로이코팅 복층유리 제작설치는 사급자재이지만 납품업체에서 제작하여 설치하므로 제비율 제외 및 견적금액에서 운반비 제외
- ▶조명등기구 관급자재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에 없는 일부품목은 대체품목으로 조정하여 발주

○ 설계내역에 맞는 일위대가 조정 등 기타 조정

- ▶조명등기구 설치(LED) : 동일 반복공정으로 비교적 쉬운 공사의 경우 90% 적용[전품 5-25]
- ▶동력반 및 분전반 설치 : 벽면설치 => 천정면 설치품 적용[전품 5-4]

심사포인트

- 현장여건에 맞는 자재 및 물량 조정 : 한전 전기인입선로, 조달청 공통시설자재단가, 옥외 보안등주 재질, 고효율 로이코팅 복층유리 제작설치, 조명등기구 관급자재 등
- 설계내역에 맞는 일위대가 및 공량 조정 : 조명등기구 설치, 동력반 및 분전반 설치 등

○○○○센터 건립 전기공사

■ 규정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규정
- 조달청 가격정보 및 시중거래 조사가격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00구 00동 산 000번지 일원
- 사업규모 : 지하1층/ 지상2층 전기설비 1식
- 사업비 : 888,938천원
- 사업목적 :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률(%)
888,938	858,555	△30,383	△3.41

■ 세부심사내용

○ 현장여건에 맞는 자재 및 물량 조정

- ▶ 옥외 보안등주 재질 변경(스테인레스 => 철재 재질)
- ▶ 옥외 보안등주 높이 변경(5m => 4m)
- ▶ 화장실 전등 용량변경(LED 20W => 12W)
- ▶ 태양광발전설비 철재구조물 삭제 : 지붕판넬에 앵커시스템으로 바로 접합
- ▶ 화장실 전기온풍기 설치 제외
- ▶ 수전설비 전력검침용 변압변류기(MOF) 형식 변경(유입 => 몰드 타입)

○ 설계내역에 맞는 일위대가 및 공량 조정

- ▶ 케이블트레이, 덕트설치 : [전품 5-8-1] 조립식 케이블 트레이 설치품 적용
- ▶ 외등공사(전선관 PE16C,22C,36C) : [전품 4-29] 강관설치 지중매설품 적용
- ▶ METER BOX(500*700*250) 설치 : 내선전공 0.95인 => 0.45인[전품 5-21]
- ▶ PULL BOX(150*150*100) 설치 : 내선전공 0.22인 => 0.04인[전품 5-4]
- ▶ LEVEL SW(오뚜기식) 설치 : 내선전공 1.1인 => 0.85인[전품5.22]
- ▶ 다기능접속함(ELB내장형) 설치 : 내선전공 0.133인 => 0.12인[전품 5-4]
- ▶ 등기구-LE-C(LED11W 직부등)설치 : 내선전공0.141인=>0.123인[전품 5-25]
- ▶ 시스템박스(전열2구) 설치 : 내선전공 0.72인 => 0.63인[전품 5-5]

심사포인트

- 현장여건에 맞는 자재 및 물량 조정 : 옥외 보안등주 재질,높이, 화장실 전등 용량, 태양광 발전설비 철재구조물, 화장실 전기온풍기, 변압변류기(MOF) 형식 등
- 설계내역에 맞는 일위대가 및 공량 조정 : 케이블 트레이,덕트, 외등공사, 계량기.폴박스, 레벨 스위치, 다기능접속함, 등기구, 시스템박스 등

○○○ 생태하천 조성사업 (전기 및 계측제어)

■ 규정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규정
- 조달청 가격정보 및 시중거래 조사가격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00구 00동 00천 하류
- 사업규모 : 전기공사 : 1식, 수배전반 제작구입설치 : 1식, 계측제어설비 제작구입설치 : 1식
- 사업비 : 1,006,782천원
- 사업목적 : 통수능력 확보 및 친환경적 주거환경 개선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률(%)
1,006,782	848,834	△157,948	△16.00

■ 세부심사내용

○ 현장여건에 맞는 적정한 자재선정 및 단가 조정

- ▶ 계측·감시제어 설비 제작구입 설치는 지역생산제품을 설계에 반영
- ▶ 시공자재 단가를 조달에서 조사하여 공표된 공통시설자재단가로 반영
- ▶ 전기실 온도상승 및 방지 및 기계실 습기 제거코자 환기팬 6대 설치
- ▶ 계측·감시제어 설비 무정전전원장치 용량(5KVA→3KVA) 변경
- ▶ 경고방송설비는 관급자재로 통신공사에 반영

○ 설계내역에 맞는 공량 조정 등

- ▶ 전기공사 내역에 정보통신품셈 적용한 것을 전기품셈 적용
- ▶ 원가계산서 토목공사요율을 건축공사요율 적용
- ▶ 퇴직공제부금비(추정금액 3억원 미만) 미적용
- ▶ 안전관리비(5억원 미만 요율 적용)
- ▶ 수.배전반 제작설치 설치비의 소운반비 미적용

심사포인트

- 현장여건에 맞는 자재선정 및 단가 조정 : 계측감시제어 설비, 시공자재 단가, 전기실 및 기계실 온도상승 방지 및 기계실 습기 제거, 무정전 전원장치 용량, 경고방송설비 등
- 설계내역에 맞는 공량 조정 : 전기품셈 적용, 원가계산서 제경비율, 수배전반 제작설치 설치비 등

5. 정보통신 부문

○○○○센터 건립 정보통신공사

■ 규정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규정
- 조달청 가격정보 및 시중거래 조사가격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00구 00동 산 000 일원
- 사업규모 : 지하1층/ 지상2층 정보통신설비 1식
- 사업비 : 300,398천원
- 사업목적 :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률(%)
300,398	270,377	△30,021	△9.99

■ 세부심사내용

- 원가계산 제비율 및 현장여건에 맞는 물량 조정
 - ▶통신장비 관급자재는 제조설치품으로 제조원가계산서에 의한 요율 적용
 - ▶옥외 주차장 및 건물 주변 보안용 CCTV카메라 옥외보안등주에 부착 적용

- 설계내역에 맞는 일위대가 및 공량 조정
 - ▶통신인입(전선관 HI16C,22C,36C,54C)공사 지중매설품 적용[통품 3-2-3]
 - ▶전선관(HI 54C) 배관시 동시포설품(2열 180%) 적용[통품 3-2-3]
 - ▶콘센트(2구 250V 15A) 설치 : 내선전공 0.096인 => 0.085인[전품 5-23]
 - ▶네트워크 장비(NVR) 설치시 점검[7-7-7] 및 선로시험품 삭제[통품 5-3-2]

심사포인트

- 원가계산 제비율 및 현장여건에 맞는 물량 조정 : 통신장비 관급자재 제조원가계산, CCTV카메라 옥외 보안등주에 부착 등
- 설계내역에 맞는 일위대가 및 공량 조정 : 통신인입공사, 전선관 동시포설, 콘센트 설치, 네트워크 장비 설치 등

○○○건설 정보통신공사

■ 규정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규정
- 조달청 가격정보 및 시중거래 조사가격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00동 000 ~ 000
- 사업규모 : 비상전화 설비공사 외 2종 1식
- 사업비 : 341,214천원
- 사업목적 : 교통개선 및 차량의 안전운행 도모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률(%)
341,214	327,566	△13,648	△4.0

■ 세부심사내용

- 원가계산 제비율 조정
 - ▶ 추정금액 3억원이상 퇴직공제부담비 삭제(국토부고시 제2012-361호)

- 설계내역에 맞는 일위대가 및 공량 조정
 - ▶ 관급자재로 구매하는 주장치(비상전화, 비상방송, 라디오재방송시스템)설치 공량 조정(관급자 설치분과 도급자 설치분에 중복 공량 적용됨)
 - ▶ 전선관(PE 28C, 36C, 54C) 배관시 동시포설품 적용
 - ▶ 내열전선(F-FR-3 2C/4SQ) 배선 직매부설품 80% 적용[전품 5-13]

심사포인트

- 원가계산 제비율 조정 : 퇴직공제부담비 삭제
- 설계내역에 맞는 일위대가 및 공량 조정 : 관급자재 구매, 전선관 배관, 내열전선 배선 등

용역분야

1. 기술용역

2. 일반용역

용역분야 계약심사

가. 용역의 분류

- 1) 「지방계약법」상의 용역이라 함은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임차·수리 등을 제외한 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 2) 일반적으로 학술연구용역, 건설기술용역, 그 외 일반용역으로 분류

나. 용역의 분류

1)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고,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4절에 근거하여 원가계산서 작성

2) 건설기술용역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설계·감리·사업관리·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 및 엔지니어링 활동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고,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측량대가의 기준 등을 근거로 하여 원가계산서 작성

3) 일반용역

학술연구용역과 건설기술용역을 제외한 모든 용역을 말하고,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5절에 근거하여 원가계산서 작성

다. 관련법령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2)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안전행정부 예규)
- 3) 조달청 표준용역 기준(www.pps.go.kr)
- 4)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교통부)
- 5) 각종 고시 공고 등 원가산정 공표자료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한국건설폐기물 수집운반협회)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측량대가의 기준(국토지리정보원 고시)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조달청)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기준
- 기타 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 한국위생관리협회 등

6) 시중노임단가

- 공사부분(대한건설협회 공표자료)
- 제조부분(중소기업중앙회 공표자료)

7) 기타 원가분석에 필요한 자료 등

라. 계약심사 의뢰시 구비서류

1) 일반 및 학술연구용역

- 계약심사요청서(사무자동화 서식)
- 원가계산서, 과업이행요청서
- 설계내역서(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포함)
-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인쇄물이 있는 경우)
- 비목별 기초계산서(학술연구용역에 한함)
- 사유서(일반경쟁입찰이 아닌 수의·제한·지명경쟁입찰 등의 계약방법으로 발주하는 경우)
- 기타 참고자료(방침서 또는 계획서, 견적서, 수의계약사유서 등 심사보조자료)

2) 건설기술용역

- 계약심사요청서(사무자동화 서식)
- 원가계산서, 과업이행요청서
- 설계내역서(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포함)
-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인쇄물이 있는 경우)
- 기타 참고자료(방침서 또는 계획서, 견적서, 수의계약사유서 등 심사보조자료)

마. 주요 검토사항

1) 거래실례가격을 우선 적용

-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www.pps.go.kr ⇒ 가격정보)
-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된 전문가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대한건설협회, 한국물가협회, 한국응용통계연구소, 한국물가정보센터, 한국공정가격협회)
-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로부터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거래장표 등 객관적 증빙자료)

2)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할 수 없을 경우 각 비목 또는 품목별로 원가계산

바. 원가산출 방법 및 기준

학술연구용역

구 분	내 용	산 출 기 준	관 련 근 거	
① 인 건 비	책 임 연구 원	지휘, 감독, 결론도출자(대학교수 수준)	인원*기준단가 (재수당, 상여금, 퇴직급여 총당금 반영 가능) 기준단가 : 별첨 참조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4절
	연 구 원	책임연구보조자 (대학교수 수준)		
	연 구 보 조 원	통계처리, 번역수행자(대학교수 수준)		
	보 조 원	타자, 계산, 원고정리 수행자		
	소 계			
② 경 비	여 비	국내외 여비(공무원여비규정, 관계 공무원 여비 제외)	인원*단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제4절
	유 인 물 비	각종 보고서 작성비(지대포함)	수량*단가	조달청 인쇄기준 요금
	전 산 처 리 비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등 사용료 및 부대비용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제4 절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실험실습에 필요한 비용	"	"
	회 의 비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 소요 경비(수당 등)	인원*단가	수당은 예산편성기준 참조
	임 차 료	특수실험실습기구, 회의장임차료 등	수량*단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4절
	교 통 통 신 비	시내교통비, 전산전화료, 우편료	인원*단가	"
	감 가 상 각 비	실험실습기구,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법인세법에 의한 계산
	조 사 비 용	현황조사 비용(인건비, 경비 등)		필요한 경우에만 계산
	소 계			
③ 순 원 가		①+②		
④ 일 반 관 리 비	기업의 유지관리활동비로서 순원가에 속하지 않은 영업비용	③의 5% 이내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4절	
⑤ 일반관리비 합산원가		(③+④)		
⑥ 이 윤	영업이익 (광주발전연구원 등 비영리단체 제외)	⑤의 10% 이내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작성요령 제4장제4절	
⑦ 이 윤 합 산 원 가		(⑤+⑥)		
⑧ 부 가 가 치 세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면세는 제외	⑦의 10%		
총 용 역 비		(⑦+⑧)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안전행정부 예규)에 의함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용역

구 분		내 용	산 출 기 준	관 련 근 거
① 재 료 비	유류대	경유, 휘발유 등 연료유	수량*단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5절
	잡품 등	주연료비의 정해진 요율	주연료의 %	"
	소 계			
② 노 무 비	운전기사	운반차량 운전자	인원*단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5절
	보통인부	상차등 필요시 인부	인원*단가	"
	중기운전자	백호등 중기 운전자	인원*단가	"
	소 계			
③ 경 비	기계경비	기계손료, 감가상각비 등	산출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5절
	폐기물 처리비	종류별, 성상별 구분 적용	수량*단가	"
	기타 소요경비	기계경비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	산출가	"
	소 계			
④순 원 가			(①+②+③)	
⑤일 반 관 리 비	기업의 유지관리 활동비로서 순원가에 속하지 않은 영업비용 (판매비, 광고비, 이자 등 제외)	④의 5%이내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5절	
⑥일반관리비 합산원가			(④+⑤)	
⑦이 운	영업이익(비영리법인 제외)	(⑥-①)의 10%이내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5절	
⑧이운합산 원가			(⑥+⑦)	
⑨부가가치세	면세업자는 제외 (부가가치세법 제12조1항)	⑧의 10%		
총 용 역 비			(⑧+⑨)	

※ 필요 항목만 계상

시설물 유지관리(청소, 경비 등) 용역

구 분	내 용	산 출 기 준	관 련 근 거		
① 재 료 비	각종 재료	용역수행에 필요한 재료에 한함	- 수량×단가		
	소 계				
② 인 건 비	기본급	직접종사자의 노동력 대가	- 노임단가×월 평균근무일수	근로기준법43조 근로기준법시행령제6조	
	제 수 당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와 야간근무(하오 10시~상오6시) 또는 휴일근로자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 통상임금+월통상임금산정기준 시간수×연장근로시간×1.5	근로기준법제56조 근로기준법시행령제6조
		휴일근로수당		- 통상임금+월통상임금산정기준 시간수×휴일근로시간×1.5	"
		야간근로수당		- 통상임금+월통상임금산정기준 시간수×야간근로시간×1.5	"
	연차수당	1년간 8할 이상 개근한자 : 15일/년		- 통상임금+월통상임금산정기준 시간수×8시간×15일+12월	근로기준법제60조 근로기준법시행령제6조
	상 여 금			- 통상임금×400% 이내	지방자치단체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작성요령4장5절
	퇴직충당금	계속근로연수 1년 :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년		- (기본급+제수당+상여금)년30일분	근로기준법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소 계				
③ 경 비	국민연금		- (기본급+제수당+상여금)×공시요율	국민연금법 제88조	
	건강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	
	산재보험료		- (기본급+제수당+상여금+식대)×공시요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조	
	고용보험료		"	고용보험법제6조	
	임금채권보장보험		"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복 리 후 생 비	피복비	제복, 작업복 등 구입비		
		안전화	안전화 구입비	- 계약목적물 달성을 위해	
		식비지원금	중식비 지원	필요한 항목에 한함	
		교통비	교통비		
	사업소세	종업원급여총액의0.5/100		- 인건비 × 0.5%	지방세법
장애인고용부담금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상시근로자 적용제외근로자)의 2%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8조	
감가상각비	기계장비의 감가상각비		- (장비금액-잔존액)×내용연수 상각율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소 계					
④순 원 가		(①+②+③)			
⑤일 반 관 리 비	기업의 유지관리 활동비	④의 5%이내		지방자치단체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작성요령제4장5절	
⑥일 반관 리 비 합 산 원 가		(④+⑤)			
⑦이 윤	영업이익(비영리법인 제외)	(⑥-①)의 10%이내			
⑧이 윤 합 산 원 가		(⑥+⑦)			
⑨부 가 가 치 세	면세업자 제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⑧의 10%)		부가가치세법제14조	
총 용 역 비		(⑧+⑨)			

유물발굴조사 용역

구 분		내 용	산출 기준	관련 근거	
순 용 역 원 가	① 노 무 비	직접인건비	인원×단가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기준 제4조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			
		조사보조원			
	보조원	-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료 등을 포함) - 주휴수당(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			
	소 계				
	② 직 접 경 비	여비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함 (국내여비만 인정)	인원×회수×단 가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기준 제5조
		현장운영비	조사 현장을 운영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비용 (인부임, 수송비, 사무실 설치비, 수도광열비, 연료비, 수선비, 임차비, 주재비 기타 운영비 등)	수량×단가	"
		조사재료비	각종 소모성 발굴용품 등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	"	"
		위탁비	외부전문가에게 위탁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	"	"
		회의비	자문회 등 각종 회의비용	"	"
		유물정리비	유물 정리 및 분석작업에 소요되는 비용 (인부임, 정리용품비, 보존처리 약품비, 유물 상자 및 보관대 설치비, 위탁비, 임차료, 자연 과학분석비, 기타 유물정리비 등)	"	" (반드시 계상)
보고서 간행비		보고서의 작성 및 간행에 소요되는 비용 (인부임, 사진제작비, 인쇄비, 발송비, 전산매 체 제작비, 자료수집비)	"	" (반드시 계상)	
소 계					
③제경비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경비 (임직원 인건비 및 간접경비 일체)	직접인건비의 100%~110%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기준 제6조		
④학술료	학술연구 및 재투자를 위한 대가로서 학술연 구비·조사요원 교육훈련비 등을 포함하는 것	직접인건비+제 경비 20~30%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기준 제7조		
소 계					
⑤총 원 가			①+②+③+④		
⑥부 가 가 치 세		면세업체는 제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⑤의 10%		
총 용 역 비			⑤+⑥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문화재청고시 제2014-2호 2014. 1. 10)

정보통신 용역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비 목	내 용	산 출 기 준
직접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관련 기술자 임금단가*소요인원”으로 계상 ○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 공표한 사업별·등급별 임금단가 적용(별표) ○ 공표임금단가에는 급료·제수당·상여금·퇴직 적립금·산재보험금 등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7조(직접인건비) -엔지니어링기술자등급기준 및 자격기준
직접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의 실비를 조사, 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비 -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사용료) - 도서인쇄비 및 청사진비 - 측정비 - 시험조사비(토질·재료 등) - 모형제작비 - 자문비 - 위탁비 - 현장운영비(현장보조원 급료 및 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비조사 계상
제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 인건비 및 직접경비 이외의 간접비 ○ (직접인건비)*110~120%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난이도에 따라 계상
기술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보유기술 사용 및 기술축적 대가 ○ 조사연구비·기술개발비·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 ○ “(직접인건비+제경비)*20~40%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난이도에 따라 계상
제세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특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해당 세액이 발생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세율 적용
총원가	위 합계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제세액)	
부가가치세	(총원가)*부가가치세율(10%)	
합계	(총원가)+(부가가치세)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2-190호, 2012. 8. 8)

소프트웨어사업 구현단계 대가산정

1. 기능점수 방식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비

절 차	주 요 내 용	산 출 물
1. 사전준비 ↓	○ 개발대상 업무와 요구사항을 명확히 정의하고, 개발 규모(기능점수) 산정방법(정통법 또는 간이법)을 결정한다.	개발대상 업무 기능 요구사항 규모산정 방법
2. 개발대상 SW 기능점수 산정 ↓	○ 요구사항에 근거하여 개발대상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식별하고, 복잡도를 고려하여 기능점수를 산정한다.	개발대상 SW 기능점수
3. 보정전 개발원가 산정 ↓	○ 산정된 기능점수에 기능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보정전 개발원가를 산정한다. - 보정전 개발원가 = 기능점수 × 기능점수당 단가 ※ 기능점수(FP) 방식에 의한 SW개발비 산정 시 기능점수 단가에 '제경비' 및 '기술료'에 상응하는 항목이 반영되어있어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다.	보정전 개발원가
4. 보정후 개발원가 산정 ↓	○ 소프트웨어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보정요소별로 보정계수를 식별한다. - 보정요소 : 규모보정, 언어보정, 애플리케이션유형보정, 품질 및 특성 보정 ○ 식별된 보정계수에 따라 개발원가를 보정한다. - 개발원가 = 보정전 개발원가 × 보정계수	보정후 개발원가
5. 직접경비 및 이윤 산정 ↓	○ 해당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련된 직접경비를 산정한다. ○ 이윤은 개발원가의 25% 이내에서 산정한다.	직접경비 이윤
6.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	○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산정한다. - SW개발비 = 개발원가 + 직접경비 + 이윤	소프트웨어 개발비

2. 투입공수 방식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비

절 차	주 요 내 용	산 출 물
1. 사전준비	○ 소프트웨어 개발 정의에 따라 개발대상 업무와 요구사항을 명확히 정의한다.	개발대상 업무요구사항
↓		
2. 개발 공수 계산	○ 소프트웨어 개발업무별 특성을 고려하여 투입인력의 기술자등급을 결정한다. ○ 소프트웨어 개발업무별 특성을 고려하여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을 결정한다.	등급별 투입공수
↓		
3. 직접인건비 계산	○ 개발업무를 수행할 인력의 직접인건비를 계산한다. - 직접인건비 = 투입인력의 기술자등급별 공수 × 소프트웨어기술자 노임단가	직접인건비
↓		
4. 제경비 및 기술료 계산	○ 개발업무를 수행할 인력의 제경비 및 기술료를 계산한다. - 제경비 계산 = 직접인건비×110~120% - 기술료 계산 = (직접인건비+제경비) × 20~40%	제경비 기술료
↓		
5. 직접경비 계산	○ 소프트웨어 개발에 실제로 소요되는 직접경비를 산정한다.	직접경비
↓		
6. SW개발비 산정	○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산정한다. - SW개발비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 직접경비	소프트웨어 개발비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2013.3.18)

1. 기술용역

○○○○○산업단지 서편 도로건설 실시설계용역

■ 규정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군 ○○면 ○리, ○리 일원
- 사업규모 : 지반조사 및 측량 1식, 실시설계 1식
- 사업비 : 612,100천원
- 사업목적 : 간선도로망 구축 및 국가산단과 ITS 자동차주행 시험장 활성화에 기여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률(%)
612,100	579,500	△32,600	△5.33

■ 세부심사내용

○ 조사측량비 조정

▶선행용역의 노선측량 결과 이용으로 노선측량비 제외

○ 지반조사비 조정

▶국가과학산업단지 및 ITS주행시험장의 지반조사 결과에 따른 공수 조정

- 지반조사공수 6공 ⇒ 5공

▶제경비 조정 : 110% ⇒ 5%(그밖의 용역 원가계산 방식적용)

○ 인쇄비 조정

▶용지도, 지장물도 및 무상귀속 서류 제외(기 실시계획인가서 작성됨)

심사포인트

- 선행용역 결과 참조 : 노선측량, 용지도, 지장물도 및 무상귀속 서류 작성비 제외
- 인근 현장의 지반조사 결과 참조에 따른 지반조사공수 조정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 규정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구 ○천 일원
- 사업규모 : 실시설계용역 1식
- 사업비 : 223,000천원
- 사업목적 : 하천의 치수기능 회복 및 자연재해예방과 더불어 자연환경이 살아있는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률(%)
223,000	186,263	△36,737	△16.47

■ 세부심사내용

○ 조사측량비 조정

- ▶ 하천기본계획시 실시한 지형현황측량 자료를 활용하여 신규 지형현황측량 제외

○ 토질조사비 조정

- ▶ 토질조사의 필요성 검토 후 목적에 부합되게 토질조사 수량 조정
- 지반조사공수 13공 ⇒ 8공

○ 인쇄비 조정

- ▶ 도서인쇄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4조(업무범위)의 실시설계의 업무범위이므로 제외

○ 손해배상보험료 조정

- ▶ 손해배상보험료는 실시설계금액만 대상으로 산출함

심사포인트

- 선행용역 결과 참조 : 하천기본계획을 참조하여 지형현황측량 제외
- 토질조사의 필요성 검토 후 지반조사공수 조정

○○지역 오수관거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 규정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구 ○○동, ○○동 일원
- 사업규모 : 실시설계용역 1식(오수관거 부설 L=18km)
- 사업비 : 199,760천원
- 사업목적 : 생활하수가 마을 앞 ○○천을 경유하여 ○○강으로 유입되므로 오수관거를 정비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조기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률(%)
199,760	176,660	△23,100	△11.56

■ 세부심사내용

○ 조사측량비 조정

▶ 기존 측량 대가산출은 노선측량(철도 및 도로 신설) 대가를 적용하였으나, 오수관로 정비공사 측량은 철도 및 도로신설 측량과는 다르므로 관로공사측량과 가장 유사한 측량항목인 수도노선측량 적용 대가 산출

○ 손해배상보험료 조정

▶ 손해배상보험료는 실시설계금액만 대상으로 산출함

심사포인트

- 조사측량비 조정 : 측량 대가 산출 조정(노선측량 ⇒ 수도노선측량)
- 손해배상보험료는 실시설계금액만 대상으로 산출

○○○○지구 공사시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1단계)

■ 규정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 조달청 가격정보 및 시중거래조사가격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구 ○○,○○,○○,○○동 일원
- 사업규모 : 공사시 사후환경영향조사 1식
- 사업비 : 188,170천원
- 사업목적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지구 개발사업 착공후 그 사업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조사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률(%)
188,170	104,670	△83,500	△44.37

■ 세부심사내용

○ 수질 및 소음·진동 측정비 조정

- ▶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환경부 예규) 제5조(직접경비)의 2항에 ‘환경질 측정분석비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사)한국환경측정대행업협회에서 제시하는 측정수수료,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토양오염검사수수료 등을 참고하여 실비로 정산 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질측정비 항목 중 우리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동일 항목 또는 유사 항목의 측정 수수료가 있는 항목은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 수수료 반영

심사포인트

- 수질 및 소음·진동 측정비를 (사)한국환경측정대행업협회의 측정수수료단가 적용에 서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 수수료 반영

○○지구 오수관로 설치공사 전면 책임감리용역

■ 규정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
-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구 ○○동,○○1,2,3동 일원
- 사업규모 : 전면책임감리용역 1식
- 사업비 : 1,400,000천원
- 사업목적 : 합류식 하수도를 분류식 하수도로 정비하여 위생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하수처리 효율증대 및 방류수역의 수질개선 효과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률(%)
1,400,000	1,172,600	△227,400	△16.24

■ 세부심사내용

○ 직접인건비 조정

▶ 감리대가 적용공사비 추가조정(160억원 ⇒ 145억원)에 따른 감리
인원수 조정

- 상주감리원 65.79인·월 + 기술지원감리원 7.31인·월
⇒ 상주감리원 61.2인·월 + 기술지원감리원 6.80인·월

○ 지역특성에 따른 직접경비 조정

▶ 주재비 조정

- 상주감리원 주재비의 29% ⇒ 14%

▶ 현지 사무원급료 조정(84,166원/日 ⇒ 42,200원/日)

- 2014년 대구시 보통인부(사무보조원) 노임으로 조정하여 적용

※ 「지역특성을 반영한 감리용역 계약심사기준」 참조

심사포인트

- 감리대가 적용공사비 추가조정에 따른 감리인원수 조정
- 지역특성에 따른 직접경비(주재비 및 현지 사무원급료) 조정 반영

2. 일반용역

재해예방사업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 규정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건설 표준품셈, 건설공사 적용 공종 및 단가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00일원
- 사업규모 : 건설폐기물(폐 콘크리트) 32,696 Ton 처리
- 사업목적 : 재해예방사업에 따른 폐기물 처리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률(%)
367,961	346,489	△21,472	△5.84

■ 세부심사내용

- 2014년 00구 건설폐기물 처리단가로 조정
 - ▶ 10,231원/Ton. → 9,634원/Ton

심사포인트

- 사업장 관할 구청의 처리 단가 적용

교통정보수집용 CCTV장치 유지보수 용역

■ 규정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00시 전역
- 사업규모 : 중앙장치 및 주변기기 1식,
교통정보수집용 CCTV 79대 및 부대시설 등
- 사업비 : 149,470천원
- 사업목적 : 교통정보수집용으로 설치된 CCTV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률(%)
149,470	146,406	△3,064	△2.05

■ 세부심사내용

○ 제경비 효율 조정

- ▶ 2013년도 주요 과업 내용과 동일하고 유지보수 대상 수량 감소를 감안하여 제경비 조정 : 94% ⇒ 90%
- ▶ 교통정보수집카메라 유지보수 대상 조정 : 81대 ⇒ 79대
- ▶ 광케이블 유지보수 대상 오류 조정 : 161km ⇒ 132km

심사포인트

- 유지보수 과업 범위 및 대상을 감안하여 제경비 및 물량 조정

재해예방사업 건설산업폐기물 운반용역

■ 규정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건설 표준품셈, 건설공사 적용 공종 및 단가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00일원
- 사업규모 : 건설폐기물(폐 콘크리트) 32,696 Ton 처리
- 사업목적 : 재해예방사업에 따른 폐기물 처리에 따른 운반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률(%)
393,041	388,377	△4,664	△1.19

■ 세부심사내용

- 운반거리 조정(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상 거리로 변경)
 - ▶ ○○산 IC ~ ○○ IC : 20.6km ⇒ 18km

심사포인트

- 운반 실측거리 적용

○○강 국가하천 감시 용역

■ 규정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표준품셈, 제조부문 직종별 조사노임 단가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00강 일원
- 사업개요 : 00강(L=58.07km) 하천감시원 용역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률(%)
268,543	261,173	△7,370	△2.74

■ 세부심사내용

- 일반관리비, 이윤 조정
 - ▶ 용역인원 등 사업내용은 전년도와 동일하나 인부임 단가 기준 변경에 의한 사업비 증가이므로 일반관리비, 이윤은 전년도 총액과 동일하게 조정

심사포인트

- 대가기준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의 일반관리비 비율 증액 불인정

가옥철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규정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표준품셈, 건설공사 적용 공종 및 단가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생활 00가로
- 사업개요 : 폐콘크리트 10,607ton, 혼합폐기물 202ton 처리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률(%)
128,380	125,780	△2,600	△2.03

■ 세부심사내용

- 사업기간이 1년미만(4개월)으로 인건비내 퇴직급여총당금 제외

심사포인트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함.

물품·제조분야

물품구매 계약심사

가. 물품의 개념

물품은 물품관리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을 말함

나. 물품의 분류

- 1) 제 조 : 특수규격의 물품을 별도의 주문에 의해 제작 절차를 거치는 것
- 2) 구 매 : 이미 제조되어진 완성품을 그대로 구입하는 것
- 3) 인쇄물 : 책자, 리플릿, 전단지, 캘린더, 포스터 등 각종 인쇄물

다. 관련법령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2)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
- 3)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자치부 예규)
- 4)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 5) 부가가치세법 등
- 6) 기타 자료
 - 조달청 가격정보, 시중 물가정보지, 견적가격
(기획재정부 허가업체 조사지:물가자료, 물가정보, 유통물가, 거래가격 등)
 - 중소기업중앙회 제조노임, 건설공사 표준품셈

라. 계약심사의뢰시 구비서류

- 1) 물품 계약심사 요청시 모든 물품 제조·구매 건은 공통적으로 규정된 서식인 계약심사 요청서(사무자동화 서식)로 작성하고, 산출기초 조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개별 유형 건별 아래 부기한 서류를 구비하여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2) 물품구매(완제품)
 - 계약심사 요청서(사무자동화 서식), 산출기초 조사서
 - 체적인 규격서·사양서
- 3) 제조 가공품
 - 계약심사 요청서(사무자동화 서식), 산출기초 조사서
 - 구체적인 규격서·사양서, 제조원가계산서

4) 수입물품

- 계약심사 요청서(사무자동화 서식), 산출기초 조사서
- 수입원, 수입물품 원가계산서
- 기타 시장재고·유통여부나 참고자료 제시

5) 수리

- 계약심사 요청서(사무자동화 서식), 산출기초 조사서
- 수리명세·수리단위별 내역서

6) 임차

- 계약심사 요청서(사무자동화 서식), 산출기초 조사서
- 임차대상·기간 및 장소·임차조건

마. 원가산출 기준

- 1) 거래실례가격 :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책자 또는 인터넷 등으로 통보한 가격, 전문 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공무원이 사업자를 대상으로 직접 조사 확인한 가격(견적서 등)
- 2) 원가계산 :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성하는 원가를 계산하여 적용(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준칙)
- 3) 인 쇄 물 : 조달청 인쇄기준요금 적용
- 4) 감정가격 : 위의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을 경우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토지, 건물, 불용품 매각 등에 이용
- 5) 수입품 구매 : 외화표시원가(CIF), 통관비, 보세창고료, 하역료, 국내운반비, 신용장개설료 포함

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 1) 일반관리비율 :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의 율을 초과하지 못함
 - 가) 음·식료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14
 - 나) 섬유·의복·가죽 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8
 - 다) 나무·나무 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9
 - 라)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 100분의 14

- 마) 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 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8
 - 바) 비금속광물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12
 - 사)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6
 - 아)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 100분의 7
 - 자) 수입물품의 구매 : 100분의 8
 - 차) 그밖에 물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11
- 2) 이윤율 :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의 율을 초과하지 못함
- 가) 제조구매 : 100분의 25
 - 나) 수입물품의 구매 : 100분의 10

사. 주요 검토사항

-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등을 기준하여 계약목적물의 규격별 단위당 가격을 조사 후 최저가격으로 적용
- 2)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확인

○○ 무대 및 대소도구 제작 및 설치 철거

■ 규정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조달청 가격정보 및 시중거래조사가격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00오페라하우스
- 사업개요 : '00000' 공연을 위한 무대제작 및 설치·철거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률(%)
58,700	53,160	△5,540	△9.44

■ 세부심사내용

- 보통합판 등 자재 단가, 내역 조정
- 과다 설계된 페인트 수량 조정 : 10개→5개

심사포인트

- 거래실례 가격 조사 적용, 과다 설계한 수량 조정

○○ 공동주택 광고기획 및 제작

■ 규정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조달청 가격정보 및 시중거래조사가격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00군 공동주택
- 사업개요 : 인터넷, TV 자막, 라디오 및 신문 광고 기획·제작 등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율(%)
206,488	177,642	△28,846	△13.97

■ 세부심사내용

- 00기 획비를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서 거래실례가격으로 조정
- 인쇄물 제작비의전자조판비, 기획비는 광고 기획비에 기 포함 되어 있으므로 중복비용 삭감

심사포인트

- 거래실례 가격 조사 적용 등

○○공사 직원근무복 제작

■ 규정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표준품셈, 제조부문 직종별 조사노임 단가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0000공사
- 사업개요 : 남자 춘추정복(하) 등 9종 13품목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률(%)
186,946	175,759	△11,187	△5.98

■ 세부심사내용

- 노무비 조정 : 직물재단공을 기계재단으로 대체(직물재단사 대행)
- 경비 조정
 - 수도광열비, 임차료, 운반하역비 제외
 - 기타경비는 법정경비(보험료 등)만 반영

심사포인트

- 노임직종 조정, 경비는 불필요 비용 제외

입상활성탄 (신탄,야자계) 구입

■ 규정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 조달청 가격정보 및 시중거래조사가격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00정수사업소
- 사업규모 : 입상활성탄(신탄,야자계) 209m³ 구입
- 사업비 : 275,880천원
- 사업목적 : 상수도 정수처리를 위한 입상활성탄 구입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율(%)
275,880	246,411	△29,469	△10.68

■ 세부심사내용

○ 제3자단가계약 금액 및 실거래 금액으로 조정

▶입상활성탄 단가 조정 : 1,320,000원/m³ ⇒ 1,179,000원/m³

심사포인트

○ 조달청 가격정보 및 시중거래가격 조사

여과지 안트라사이트 구매

▣ 규정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 조달청 가격정보 및 시중거래조사가격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00정수사업소
- 사업규모 : 안트라사이트 151m³ 구매 및 운반
- 사업비 : 100,888천원
- 사업목적 : 기존 모래 여과층 일부를 안트라사이트로 구조개선
하여 여과능력 증대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률(%)
100,888	86,070	△14,818	△14.69

■ 세부심사내용

○ 타견적서 조사를 통한 금액 조정

▶안트라사이트 단가 조정 : 668,000원/m³ ⇒ 605,000원/m³

심사포인트

○ 타견적 징구를 통한 가격 재조사

○○○○ 지도 제작

■ 규정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가격정보 등 시중거래가격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광역시
- 사업개요 : 지도 40만부 제작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률(%)
95,000	86,560	△8,440	△8.88

■ 세부심사내용

- 지도 제작 기술료 및 인쇄 용지 단가 조정

심사포인트

- 거래실례가격 조사 적용 등

열화상 카메라외 13종 등 계측기 구매

■ 규정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가격정보 등 시중거래가격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0000공사
- 사업개요 : 00철도 0호선 물품 구입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률(%)
59,730	54,018	△5,712	△9.56

■ 세부심사내용

- 레벨메타 등 4종 단가 조정

심사포인트

- 거래실례가격 조사 적용

사무자동화시스템 이중화 구축

■ 규정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00철도공사
- 사업규모 : 전자문서 스마트플로우 OSE 3.5 1식, EDM 1식, KM 1식
- 사업비 : 100,888천원
- 사업목적 : 사무자동화시스템 S/W 이중화 구축을 통해 공사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안정된 사무자동화시스템 운영 기반을 실현하기 위함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률(%)
121,000	62,200	△58,800	△48.60

■ 세부심사내용

○ 과업 내용 조정

▶EDM(문서관리시스템), KMS(지식관리시스템) 이중화 구축 대상에서 제외

○ 제경비, 기술료 삭감

▶전자문서SW 기술지원 산정은 이중화 연동에 필요한 설치지원 부분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시 산정하는 제경비, 기술료 부분은 삭감

심사포인트

- 과업 범위 조정을 통한 가격 심사

고정식 무인교통 단속장비 설치

■ 규정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00군
- 사업규모 : 무인교통단속장비 어린이보호구역 3개소 설치
- 사업비 : 153,095천원
- 사업목적 : 어린이보호구역내 차량 속도가 높고 신호위반에 따른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을 대상으로 과속신호위반 다기능 CCTV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률(%)
153,095	141,896	△11,199	△7.32

■ 세부심사내용

- 원가계산서 요율 조정 및 중복 계상된 부분 조정
 - ▶ 물품구매 설치 건으로 공사에 적용하는 일반관리비, 이윤 삭감
 - ▶ 간접노무비 계상은 근거 없으므로 삭감
 - ▶ 공사에 적용하는 기타경비 삭감
 - ▶ 검사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는 모뎀설치비 삭감

심사포인트

- 물품 설치에 맞는 원가계산서 작성

원심분리기 회전체 제조구매

■ 규정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00환경공단
- 사업규모 : 분뇨 전처리 설비 원심분리기 회전체 제조 구매
- 사업비 : 52,690천원
- 사업목적 : 위생처리장 분뇨 전처리를 하기 위한 설비 구매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률(%)
52,690	49,720	△2,970	△5.64

■ 세부심사내용

○ 설계내역서 조정

- ▶ 회전체 제작 설치 경비에 시험검사비를 적용하는 경우는 외부에 의뢰하는 경우에 소요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Bowl불균형시험 및 Screw불균형시험에 계상된 경비 삭감
- ▶ 소모품 및 예비품은(V벨트 등) 제품의 품질 확보를 위해 필요시 구매

심사포인트

- 과업 내용과 설계 적정성 확인

구·군 우수사례

○○○대학교 서편 도로개설공사

■ 규정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규정
-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0구 0동 일원
- 사업규모 : 도로개설 B=8.0m, L=153m
- 사업비 : 407,030천원
- 사업목적 : 도시계획에 따른 도로개설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률(%)
407,030	402,200	△4,830	△1.19

■ 세부심사내용

○ 도면과 현장이 상이한 구간 조정

- ▶ 우측 횡배수관종 변경 : 각형흡관 D400 ⇒ D300, 시·종점부 트랜치측구 삭제, 우측인도 폭 조정 : 2.7m ⇒ 2.5m
- ▶ 옹벽구간 배수구 자갈채움 ⇒ Drain board 설치

○ 수량산출서와 내역서 조정

- ▶ 기존 시설물 철거 : 집수정 뚜껑 고재처리, 시각장애인블럭 물량 재산출
- ▶ 고재대, 각형흡관, 트랜치측구설치, 옹벽 뒷채움 부설 삭제

○ 타부서 협의사항 반영

- ▶ 일방통행 노면표지 설치, 횡단보도 및 점자블럭 설치, 종점부 반사경 설치
- ▶ 차도폭 3.0m 이상 확보 : 교통과 의견
- ▶ 부대시설 종평면도, 도로구조물도 작성 : 화강경계석 규격 추가 및 수정

심사포인트

- 2014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시 계약심사 기준마련 원기분석자문회의 결과 참조
- 각형흡관, 우측인도 폭, 집수정 크기, 트랜치측구 수량 조정 : 현장과 상이

○○로 하수관거 설치공사 실시설계

▣ 규정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한국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 용역개요

- 용역위치 : 0구 00동 일원
- 용역규모 : 하수관거 설치 B=2.0x1.5, L=910m
- 용역비 : 105,300천원
- 용역목적 : 하수도기본계획에 의거 관경 확대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률(%)
105,300	103,100	△2,200	△2.09

■ 세부심사내용

○ 인쇄비 조정

- ▶ 도서인쇄비(보고서, 보고서부록, 각종 도서작성)는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의 기준 제14조 참조

심사포인트

- 노무비 및 산출경비 산정기준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 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 규정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규정
-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00초등학교 외6개소
- 사업규모 : 유색포장 A=1,136m², 보도포장 A=334m², 디자인웬스 71경간
- 사업비 : 161,240천원
- 사업목적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률(%)
161,240	143,454	△17,786	△11.03

■ 세부심사내용

○ 도면과 현장이 상이한 구간 조정

- ▶ 기존웬스 상태 양호로 디자인 웬스 철거 제외 : 71경간 ⇒ 40경간
- ▶ 관급자재 조정 : 디자인 웬스 71 ⇒ 40경간

심사포인트

- 2014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2014년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참조
- 상태 양호한 기존 디자인웬스 존치, 관급자재 조정 : 현장과 상이

○○유원지 동편 도로개설공사

■ 규정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규정
-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0구 00동 일원
- 사업규모 : 오·우수관로 L=247m, 포장공 A=763m²
- 사업비 : 116,200천원
- 사업목적 : 교통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도로개설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률(%)
116,200	102,043	△14,157	△12.18

■ 세부심사내용

○ 토공 및 우수공 수량 및 단가 조정

- ▶현장에 맞게 절토 단가 조정 : 백호0.4m³+인력10% ⇒ 백호0.4m³
- ▶깨기 작업량(Q) 조정 : 3.3m³/hr ⇒ 4.6m³/hr
- ▶합판거푸집 4회 ⇒ 유로폼

○ 부대공 수량 및 단가 조정

- ▶교통안전시설물 수량 조정 : 5개 ⇒ 3개
- ▶동상방지층 삭제, 보조기층용 혼합골재 삭제

심사포인트

- 2014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2014년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참조
- 콘크리트 깨기, 합판거푸집, 동상방지층 삭제, 교통안전시설물 등 : 현장에 맞게 조정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공사

■ 규정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규정
-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00구 0어린이집 주변
- 사업규모 : 과속방지턱 5개소, 칼라포장 A=1,477m² 등
- 사 업 비 : 126,735천원
- 사업목적 : 어린이 및 노인 취약지역 보호구역 개선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률(%)
126,735	118,368	△8,367	△6.60

■ 세부심사내용

○ 현장이 상이한 구간 조정

▶ 터파기 공정 삭제 : 단가산출서 공사설명판

○ 원가계산서 재작성

▶ 교차로 알리미, 안전휀스 설치내역 제경비 산출 제외 : 직접공사비
조정에 따른 제경비 재산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시 a, b중 적은 금액 적용

심사포인트

- 2014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2014년 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단가 적용
- 원가계산서 재작성 : 2014년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길 공사 기본및실시설계용역

■ 규정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한국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 용역개요

- 용역위치 : 0구 00동 일원
- 용역규모 : 도로디자인 정비, 상징조형물, 옥외광고물 개선 등
- 용역비 : 42,000천원
- 용역목적 : 도시정비를 통한 도심활성화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률(%)
42,000	39,000	△3,000	△7.14

■ 세부심사내용

○ 설계요율 조정

- ▶설계비를 제외한 순수공사비에 설계요율 적용 : 800 ⇒ 760백만원
- ▶손해배상공제료 적용요율 조정 : 도로 ⇒ 관람집회시설 용역비

심사포인트

- 설계요율 적용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 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경관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규정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한국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 용역개요

- 용역위치 : 00네거리 ~ 000네거리 일원
- 용역규모 : 토목, 조경 및 전기공사 L=1.4km
- 용역비 : 87,488천원
- 용역목적 : 도시활성화를 위한 경관개선사업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률(%)
87,488	79,853	△7,635	△8.73

■ 세부심사내용

○ 설계요율 조정

- ▶ 기획 및 설계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실시설계비 조정 : 10% 감액
- ▶ 중·횡단 측량 일위대가 조정 : 측부 ⇒ 보통인부

심사포인트

- 설계요율 적용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5조,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 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 주민센터 환경개선사업

■ 규정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규정
-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0구 00동 일원
- 사업규모 : 건축, 기계설비공사 A=905.83m²
- 사업비 : 326,178천원
- 사업목적 : 주민센터 환경개선사업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률(%)
326,178	295,040	△31,138	△9.55

■ 세부심사내용

○ 건축 시설공 수량 및 단가 조정

- ▶ 관급자재 금액 조정 : 시스템에어콘 조달수수료 중복 적용
- ▶ 이동식강관말비계 일위대가 가새 수량 조정 : 0.24 ⇒ 0.12개
- ▶ 인서트설치 수량산출 오류 정정
- ▶ 건설품셈과 조달청, 시장시공가격 비교 반영 : 경량철골천정틀, AL 몰딩 설치, PVC창호 설치, 초배지 등
- ▶ 가구 구입을 도급공사와 별도 구입 조치

심사포인트

- 2014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조달청, 가격정보 및 시중거래조사가가격 비교 적용
- 가구 구입을 도급공사와 별도로 구입 조치

○○동 골목시장 하수본관 설치공사

▣ 규정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규정
-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0구 00동 골목시장 일원
- 사업규모 : 하수관 부설(D700) L=230m, D500 L=75m
- 사업비 : 182,890천원
- 사업목적 : 하수관 부설로 침수 예방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률(%)
182,890	173,132	△9,758	△5.33

■ 세부심사내용

○ 우수공 수량 및 단가 조정

- ▶ 유리섬유관(D700) 접합 : 56 ⇒ 52개소
- ▶ 유리섬유관(D700) 절단 : 8 ⇒ 6개소
- ▶ PE이중벽관(D500) 접합 : 13 ⇒ 12개소

○ 부대공 수량 및 단가 조정

- ▶ PE 안전휀스 수량 조정 : 314m ⇒ 150m
- ▶ 교통통제 신호수 조정 : 22일 ⇒ 20일
- ▶ 자재단가 조정 : 주물뚜껑, 아스콘

심사포인트

- 2014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2014년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참조
- 재료비 조정 : 조달청 가격정보 및 시중거래조사가격

○○폭포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 규정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규정
-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0구 00동 00공원내
- 사업규모 : 보수·보강 B=40m, H=12.4m
- 사업비 : 132,796천원
- 사업목적 : 오래된 시설물 보수·보강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률(%)
132,796	109,191	△23,605	△17.77

세부심사내용

○ 현장여건에 맞는 수량 및 단가 조정

- ▶ FRP 보수면적 개체, 문설치 면적공제 : 488㎡ ⇒ 465㎡
- ▶ 콘크리트 타설 : 비탈면 타설 ⇒ 배관타설
- ▶ 잡철물 제작·설치 : 복잡 ⇒ 보통
- ▶ 공사안내간판 조정 : 2개소 ⇒ 1개소
- ▶ ㄱ형강 녹막이페인트칠 : 258㎡ ⇒ 409㎡
- ▶ 혼합폐기물 운반트럭 변경 : 24ton D/T ⇒ 2.5ton D/T

심사포인트

- 2014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2014년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참조
- 재료비 : 조달청 가격정보 및 시중거래조사가격

○○ 어린이공원 재정비공사

■ 규정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규정
-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00구 00동 00공원내
- 사업규모 : 조합놀이대, 팔각정자, 소나무외14종 식재 등
- 사업비 : 325,287천원
- 사업목적 : 낡고 오래된 어린이시설물 재정비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률(%)
325,287	305,314	△19,973	△6.14

■ 세부심사내용

- 현장여건에 맞는 수량 및 단가 조정
 - ▶ 자연석판석(500x500xT50)의 할증량 불필요하여 삭제
 - ▶ 우레탄포장의 기초콘크리트 두께 조정 : 15cm ⇒ 10cm
 - ▶ 맥문동 가격 수정 : 900원 ⇒ 750원, 물가자료 참조
 - ▶ 품질시험비 및 품질시험 자재 삭제 : 석재, 굳은 콘크리트, 보통블럭
 - ▶ PE이중벽관(D200, 단층관)의 인력품 수정 : 배관공 0.023인 ⇒ 0.0163인, 보통인부 0.023인 ⇒ 0.0163인
 - ▶ 놀이시설검사 수수료 반영 : 고무바닥, 조합놀이대, 시소 등

심사포인트

- 우레탄포장, 투수블럭포장, 황토포장, 고무매트포장의 기초 혼합쇄석 두께 :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2011. 9) 준용
- 앵커볼트 설치, 평데크, 잡철물 제작설치 : 건설공사 표준품셈 건축 7-2-5, 2011년 원가 분석 자문회의 자료 준용

○○천 생태하천복원사업(설계변경)

■ 규정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규정
-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00구 00동 00고등학교 주변
- 사업규모 : 생태하천 복원 L=7.0km
- 사업비 : 1,605,685천원
- 사업목적 : 생태하천 정비로 하천 오염 방지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률(%)
1,605,685	1,584,912	△20,773	△1.29

▣ 세부심사내용

○ 추락방지설비 수량 및 단가 조정

- ▶수평비계 설치의 강관 등 자재수량 조정 : 강관 2.7m⇒2.03m,
클램프 0.27개⇒0.69개, 비계공 0.03인⇒0.015인
- ▶안전망 설치 조정 : 비계공 0.019인 ⇒ 0.015인(한국석면환경협회)
- ▶추락방지망, 방진망, 이음철물, 조임철물 등 : 재료비 조정

심사포인트

- 안전망 설치 : (사)한국석면환경협회 자료 참조
- 재료비 : 물가자료, 유통물가, 물가정보, 거래가격 참조

우수저류시설 타당성조사 용역

▣ 규정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한국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 용역개요

- 용역위치 : 00구 00동 00신시장 일원
- 용역규모 : 침수원인분석 및 우수저류시설 타당성조사 1식
- 용역비 : 91,630천원
- 용역목적 : 침수예방 방지를 위한 우수저류시설 설치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률(%)
91,630	44,880	△46,750	△51.02

세부심사내용

○ 우수저류시설 소요인력 조정

▶기술사 : 9.56인⇒3.86인, 특급기술자 : 20.48인⇒7.26인, 고급기술자 : 45.53인⇒18.02인, 중급기술자 : 61.12인⇒25.48인, 초급기술자 : 55.93인⇒24.67인, 중급기능사 : 25.31인⇒9.16인

○ 인쇄비 산출 재조정

▶2005년 인쇄기준요금 반영

○ 용역참여대상 기준 수정

▶상하수도, 수자원, 수질관리, 환경영향평가대행자 ⇒ 상하수도, 수자원, 수질관리, 구조

심사포인트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단가 및 엔지니어링사업 노임단가
- 재료비, 기계경비 : 시중거래조사가격

○○○마을 도로건설공사

■ 규정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규정
-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00구 00동 00공원내
- 사업규모 : 도로개설 B=8~10m, L=205m
- 사업비 : 265,258천원
- 사업목적 : 도시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도로건설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률(%)
265,258	223,911	△41,347	△15.59

■ 세부심사내용

○ 현장여건에 맞는 수량 및 단가 조정

▶철거부분의 지장물 시간당 작업량(Q) 조정 : $3.5\text{m}^3/\text{hr} \Rightarrow 7.0\text{m}^3/\text{hr}$

▶흡관(D400) 하차비 삭제 : 147분 \Rightarrow 0분

▶지장물 단위용량 조정 : $0.85 \Rightarrow 0.6$

심사포인트

- 2014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2014년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적용
- 재료비 : 조달청 가격정보 및 시중거래조사가격

구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규정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규정
-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00군 00면 00리 구마을 일원
- 사업규모 : 도로계획도로 B=8.0m, L=514.0m
- 사업비 : 649,453천원
- 사업목적 :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발전 향상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률(%)
649,453	615,010	△34,443	△5.30

■ 세부심사내용

○ 토공 및 구조물공 수량 및 단가 조정

- ▶ 표토제거 삭제, 지장물 철거, 콘크리트포장 깨기, 설축헐기, 무근콘크리트깨기 : Q값 조정, 들어내기 공정 삭제
- ▶ 철근가공 : 현장가공 ⇒ 공장가공

○ 교량공, 포장공 수량 및 단가 조정

- ▶ 암터파기 ⇒ 암파쇄로 공종 변경
- ▶ CCTV조사 분리 발주, 자재변경 : 사급 ⇒ 관급

○ 부대공 수량 및 단가 조정

- ▶ 분진망 설치를 환경보전비로 대체
- ▶ 자주식장비 운반비 삭제, 철근운반거리 수정
- ▶ 조사측량비 조정 : 중심선측량은 불필요하므로 삭제
- ▶ 디자인비 조정 : 단순 업무보조원은 2인 이내로 제한(4인⇒2인)

심사포인트

- 2014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2014년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적용
- 재료비 : 조달청 가격정보 및 시중거래조사가격,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

○○강변축구장 건설공사

■ 규정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규정
-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00군 00면 00리 일원
- 사업규모 : 축구장 정비 1식 등
- 사업비 : 485,000천원
- 사업목적 : 기존축구장 정비 및 다목적놀이마당 부지정지로 환경개선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률(%)
485,000	451,420	△33,580	△6.92

세부심사내용

○ 포장공 및 시설물공 수량 및 단가 조정

- ▶ 천연잔디포장 부분을 잔디를 사급자재로 별도 계산 : 이윤, 제경비 제외
- ▶ 그물망휼스(탈부착형) 자재 조정 : 사급자재 ⇒ 관급자재
- ▶ 합판거푸집품 조정 : 형틀목공 0.3⇒0.22인, 보통인부 0.25⇒0.12인
- ▶ 식재공 부가세 조정 : 교목, 관목은 부가세 공제품목으로 부가세 중복으로 제외

심사포인트

-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조정 : 한국형 잔디, 그물망휼스
- 재료비 : 조달청 가격정보 및 시중거래조사가격 적용, 상수관로 인입비 누락분 반영



Chapter **Ⅲ 부 록**

1. 대구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2. 예정가격 작성요령
3. 계약심사 운영요령

제1장 대구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순 서

제1조 목 적

제2조 정 의

제3조 계약심사 대상사업

제4조 계약심사 제외사업

제5조 심사요청

제6조 심사실시

제7조 심사결과

제8조 원가분석자문회의

제9조 삭제

제10조 사후관리 등

대구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소관부서 : 감사관실]

[제정 2008. 11. 10 규칙 제2540호]

개정 2009. 9. 10 규칙 제2581호

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5호

개정 2011. 12. 12 규칙 제2667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고 원가계산, 물품구매·제조의 원가산정 적정성 등을 심사·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 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시 의회사무처(개정 2011. 12. 12 규칙 제2667호)
 - 나. 삭제<2011. 12. 12 규칙 제2667호>
 - 다. 삭제<2011. 12. 12 규칙 제2667호>
 - 라. 자치구·군
 - 마. 시 지방공기업
 - 바. 시 출연·출자기관(다만, 50% 미만 출연·출자기관은 제외)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자치구·군의 대상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 및 재배정사업으로 한다.(개정 2009. 9. 10 규칙 제2581호)(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5호)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5억원 이상의 공사
-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5호)
- 다.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5호)
- 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5호)
- 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5호)
- 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5호)

2.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로서 1회 설계변경 금액으로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개정 2009. 9. 10 규칙 제2581호)(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5호)

3. 삭제<2009. 9. 10 규칙 제2581호>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용역(개정 2009. 9. 10 규칙 제2581호)
- 나.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용역(개정 2009. 9. 10 규칙 제2581호)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용역(개정 2009. 9. 10 규칙 제2581호)

5. 물품의 제조·구매 중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물품의 제조·구매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9. 9. 10 규칙 제2581호)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조달발주사업
2. 삭제<2011. 3. 10 규칙 제2645호>
3. 삭제<2009. 9. 10 규칙 제2581호>
4.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신설2009. 9. 10 규칙 제2581호]
5. 그 밖에 재해 및 재난복구사업으로서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거나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보아 계약심사가 불필요하거나 연례 반복사업이고 전년도 평균 조정율이 1퍼센트 미만인 사업으로서 대구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업(개정 2009. 9. 10 규칙 제2581호)(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5호)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사업과 위탁보조사업은 대금을 교부하기 전에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및 단서신설 2011. 3. 10 규칙 제2645호)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8호서식의 대상사업별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9. 10 규칙 제2581호)

제6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

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삭제<2011. 12. 12 규칙 제2667호>

제8조(원가분석자문회의) 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원가분석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기타 시장이 필요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자문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감사관이 되고,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1. 12. 12 규칙 제2667호)

③ 그밖에 자문회의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삭제<2009. 9. 10 규칙 제2581호>

제10조(사후관리 등) ① 계약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은 별도의 심사대장에 등재하여 사후관리(DB관리를 포함한다)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9. 9. 10 규칙 제25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1. 12. 12 규칙 제26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9.9.10 규칙 제2581호)(개정 2011.3.10 규칙 제2645호)

공사계약 심사요청서

공 사 명		발주부서	
공사위치		공사구분	종합, 전문, 기타
공사기간	(개월)	계약방법	
요청금액	· 계 : 천원 - 도 급 비 : - 관 급 비 :	금회 사용가능한 예산액	· 계: 천원 - 공사비 : - 보상비 : - 기 타 :
설 계 자	· 상 호 : · 책임기술자 :	· 대 표 자 : (전화번호 :)	
설계기간	~	설계완료일	
발 주 처	· 담 당 자 : (전화번호 :)		
◦ 공사개요 :			
◦ 첨부서류 1. 설계도서(원가계산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등) 각 1부 2. 설계도서 전산파일(내역서 : 자동 연산조치된 엑셀 변환파일, 도면:Auto CAD)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1.12.12 규칙 제2667호)

물품구매계약 심사요청서

건 명		발주부서	
산출금액	원		
구 매 예정일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 상 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대표자 :	
기 타			
◦ 물품 사양 :			
◦ 첨부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원가계산서 1부 3.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규격·사양서 1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전산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1.12.12 규칙 제2667호)

인쇄물계약 심사요청서

발주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건 명					
산출금액	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mm × mm)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g), 내지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체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 첨부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이행요청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전산파일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6호서식)

인쇄물기획편집계약 심사요청서

발주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건 명					
산출금액		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용 지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 첨부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전산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09.9.10 규칙 제2581호>

공사 설계변경 심사요청서

공 사 명		발주부서	
공사위치		공사구분	종합, 전문, 기타
공사기간	(개월)	계약방법	
요청금액	◦ 계약금액: 천원 - 도 급 비: - 관 급 비: ◦ 설계변경요청금액: 천원 - 도 급 비: - 관 급 비:	금회 사용가능한 예산액	계: 천원 - 공사비 : - 보상비 : - 기 타 :
시 공 자	상호 : 현장대리인 :	대표자 : (전화 :)	
감 리 자	상호 : 책임감리원 :	대표자 : (전화 :)	
발 주 자	담당자 :	(전화 :)	
공사개요			
◦ 설계변경사유:			
◦ 첨부서류 1. 설계도서 각1부(원가계산서, 도면, 지방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등) 2. 설계변경 이유조서,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변경, 금액변경내역 3. 제1호 및 제2호의 설계도서 전산파일(내역서:엑셀파일, 도면:Auto Cad)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제3절 적격심사에 따른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

제4절 감정가격 등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 칙

제2관 제조 원가계산

제3관 공사 원가계산

제4관 학술용역 원가계산

제5관 그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제6절 실적공사비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 칙

제2관 실적공사비 원가계산

제7절 원가계산 관련기관

제1관 원가계산용역기관

제2관 원가검토기관

제8절 보칙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1절 통칙

1. 목적

이 요령은 법 제11조, 시행령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의 추정가격·예정가격의 작성, 원가계산·원가검토기관의 등록 등에 적용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 가. 추정가격 :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 나. 예정가격 :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자,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이나 계약 체결 전에 미리 작성 비치해 두는 가격을 말하며 개산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결정하는 개산예정가격을 포함한다.
- 다. 거래실례가격 : 시중에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계약담당자는 제4절 “3-가”의 각 호에 따른 가격 중에서 우선순위 없이 계약목적물의 내용, 특성,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다.
- 라. 감정가격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나 감정평가사(「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평가업무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한한다)가 감정 평가한 가격을 말한다.
- 마. 견적가격 : 해당 기술력과 축적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나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을 말한다.

제2절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1. 추정가격의 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예산에 반영된 금액이나 해당 규격서·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가”부터 “라”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가. 단가계약의 경우는 제조·구매·수리·보수·복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이하 “제조·구매·복구 등”이라 한다)의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

나.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1)”과 “2)” 중 어느 하나의 금액

1) 해당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나 직전 12월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월 동안의 수량과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고려하여 조정한 금액

2) 동일 회계연도나 직후 12월 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다. 물품·용역의 리스·임차·할부구매 계약과 총 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1)”과 “2)” 중 어느 하나의 금액

1) 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2)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개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라. 조달하려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 가능한 금액

2.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 기간, 수급상황, 계약이행의 난이도, 계약조건, 그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나. 예정가격은 원칙적으로 입찰에 부칠 사항이나 수의계약의 목적이 되는 사항의 가격 총액에 대하여 결정해야 한다.

다. 희망수량입찰의 경우 예정가격은 해당 물품의 단가로 정해야 한다. 이 경우 물품의 제조·구매에 관한 입찰인 때에는 입찰에 부치고자하는 물품의 총수량을 기준으로 한 예정가격조서에 따라 해당 물품의 단가를 정해야 한다.

라. 공사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의 경우와 물품의 제조·구매·복구, 용역 등의 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나 규격서 등에 따라 해당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구매·복

구, 용역 등(이하 "장기물품제조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이나 총제조금액 등의 범위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다. 예정가격은 계약목적물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복구 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바.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되, 공사에서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실적공사비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법 제3조에 따른 교육기관은 교육감)가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사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1) 시·도와 시·군·구는 시·도지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실적공사비를 적용해야 한다.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등 그밖의 기관도 이를 준용한다.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따라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의 원가심사를 통하여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해야 한다.

3.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가.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나.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 등을 사용한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다.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이하 “실적공사비에 따른 가격”이라 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유사한 거래실례가격이나 견적가격

4. 예정가격의 작성절차

가.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아래 절차를 준용하여 작성한다.

① 추정가격 작성 → ②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작성 → ③ 기초금액 작

성 → ④ (복수예비가격 작성) → ⑤ 예정가격조서 작성 → ⑥ 예정가격 결정

나.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기술 또는 설계 담당공무원(원가계산 용역기관 포함)등이 설계서에 따라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등으로 작성하거나 직접 조사하여 작성할 수 있다.

5. 예정가격 결정 시 세액합산 등

가.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관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을 포함해야 한다.

나. 원가계산의 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위 세액을 뺀 공급가액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대상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해당액을 합산해야 한다.

6. 예정가격조서의 작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이 장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예산 사정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예정가격 작성 당시의 관련법령 및 원가계산 자료를 적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원가계산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 조서에 명시해야 한다.

7. 예정가격의 비치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격서와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다음 “1)”과 “2)”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이를 갖추어 두거나 입력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의 매각 등 관련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면에 의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 작성된 예정가격을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나 가격협상장소 등에 갖추어 둘 것

2)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 작성된 예정가

격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할 것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입찰할 때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개산예정가격을 작성하고 “가”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이를 갖추어 두거나 입력해야 하며 개산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8. 예정가격 작성의 예외

가. 다음의 경우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2)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2억 원(전문 1억 원,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그 밖의 공사 8천만 원) 이하인 공사, 추정가격이 5천만 원(임차·임대는 연액 또는 총액 기준) 이하인 물품제조·구매·용역·그 밖의 계약의 경우로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 3) 시행령 제43조·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4) 시행령 제81조·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5)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의 경우(이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나. 거래실례가격이 없어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로 국제입찰 적용대상인 물품과 용역 계약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면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지역별·시기별로 가격차가 심한 경우
- 2) 특정제작자만이 제작할 수 있는 경우
- 3) 국제시세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
- 4) 제작자의 설계에 따라서 가격차가 심한 경우
- 5) 공급자가 제시한 규격에 따라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 6) 긴급히 구매할 필요가 있어 예정가격을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9. 예정가격의 변경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와 제27조(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3절 적격심사에 따른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

1. 기초금액의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계약담당자는 기술 또는 설계 담당자(원가계산용역기관·업체 등 포함) 등이 거래실례가격·원가계산가격 및 견적가격 등에 따라 조사한 가격이나 설계가격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한 기초금액을 작성해야 한다.

2. 기초금액의 확정

가.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의 물량 또는 가격이 해당 비목의 반영기준에 비하여 과다·과소 반영되어 있는 경우 이를 가감조정 한 후 부가가치세액 등을 합산한다.

1) 계약심사부서의 계약심사담당자는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의 원가심사를 통하여 가격의 과다과소를 검토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의 검토결과를 고려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나. 기초금액이 가감 조정된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에 그 조정내용과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3. 기초금액의 공개

작성된 기초금액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전까지 지정정보처리장치나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4. 복수예비가격의 작성

계약담당자는 기초금액에 $\pm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되,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0\% \sim +3\%$ 범위 안에서 7개, $0\% \sim -3\%$ 범위 안에서 8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이때 복수예비가격간의 폭은 최대한 확대한다.

5. 복수예비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과 공개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을 실시한 후 참가자 중에서 4인(우편입찰 등으로 인하여 개찰장소에 출석한 입찰자가 없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자 2인)을 선정하여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토록 한 후 이들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한다.

나. 추첨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해야 하며, 예정가격 작성을 위하여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과 이외의 예비가격은 개

찰장소에서 입찰참가자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입찰 종료후 복수예비가격 15개,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와 예정가격을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2인 이상 전자견적에 따른 수의계약이거나,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적격심사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하는 자가 정한 기준·절차에 따라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하여 예정가격을 정한다.

6. 예정가격의 원단위 절상

계약담당자는 복수예비가격 4개를 평균한 금액을 산출한 결과 1원미만이 있을 때에는 단가입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절상해야 한다.

제4절 감정가격 등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1. 감정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예상 감정가격이 5백만 원 이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해도 예정가격 결정이 가능하다고 계약담당자가 판단한 경우에는 1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견적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고, 원가계산이나 실적공사비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견적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거래실례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가.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가격정보)
- 2)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거래가격, 물가자료, 유통물가, 물가정보 등
-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가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 4) 법령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에서의 거래실례가격

나.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산출방법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때는 거래실례가격에는 이미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따로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공사원가계산방식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거래실례가격으로 작성된 사급자재(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해당공사 시공에 투입하는 자재)는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직접재료비에 반영하여 일반관리비·이윤 등의 요율이 반영되어야 한다.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칙

1. 원가계산의 분류

원가계산은 제조 원가계산, 공사 원가계산 및 용역 원가계산으로 구분하되, 용역원가계산에 관하여는 제4관과 제5관에 따른다.

2. 원가계산의 비목

원가계산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 작성한다.

3. 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 1) 재료비=재료량 × 단위당가격
- 2) 노무비=노무량 × 단위당가격
- 3) 경 비=소요(소비)량 × 단위당가격

나.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별 단위당 가격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계산한다.

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과 그 물량(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해야 한다.

라. “다”의 각 세비목과 그 물량산출을 할 때에는 계약목적물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의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 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가 이 절에 따라 원가계산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제2절 “6”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표준품셈을 이용하여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 가장 최근의 표준품셈을 이용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이하 “면세업체”라 한다)와 과세되는 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되, 면세업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입찰공고문 및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관 제조 원가계산

1. 제조원가

제조원가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작성방법

제조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조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제조원가계산서의 일반관리비나 이윤의 다음 비목으로 반영해서는 아니 된다.

3. 재료비

가. 직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 1) 주요재료비 : 계약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 2) 부분품비 : 계약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 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와 “5-다-13) 외주가공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나. 간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 1) 소모재료비 : 기계오일, 접착제, 용접가스, 장갑, 연마재 등 소모성 물품의 가치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 내용년수 1년 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소득세법에 따른 상당금액 이하인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3) 포장재료비 : 제품포장에 소요되는 재료의 가치

다.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 재료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라. 계약목적물의 제조 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이나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한다.

4. 노무비

가.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항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이 인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1) 기본급 : 「통계법」 제4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 가격이나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 가격으로서 그 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2) 제수당 : 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등 작업에서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나. 간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직접 제조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보조 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이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가”의 내용을 준용하여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직접노무비는 제조공정별로 작업인원, 작업시간, 제조수량을 기준으로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 직접노무비 = 노무량 × 노무비 단가

라. 간접노무비는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간접노무비율(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을 곱하여 계산한다.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마. “라”의 간접노무비는 “다”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다만, 제조 작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작업 현장의 기계화, 자동화 등)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보다 초과하여 반영할 수 있다.

5. 경비

가. 경비는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된 제조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나. 경비의 산출

경비는 해당 계약목적물 제조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활용하여 산정해야 한다.

다. 경비의 세비목

- 1) 전력비, 수도광열비 :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
- 2) 운반비 :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반비로서 원재료나 완제품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 등을 말한다.
- 3) 감가상각비 : 제품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령에서 정한 감가상각방식에 따라 기준내용연수(基準耐用年數)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법인세법에서 정한 내용연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사용되는 전용기기에 한하여 그 내용연수를 별도로 정하거나 특별상각할 수 있다.
- 4) 수리수선비 :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선박차량 등 운반하는데 쓰는 기구, 내구성 공구, 기구제품의 수리수선비로서 해당 목적물 제조과정에서 그 원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대수리 수선비는 제외한다.
- 5) 특허권사용료 : 계약목적물이 특허품이거나 그 제조과정의 일부가 특허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특허권 사용계약에 따라 제조과정에서 발생

한 사용료를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 6) 기술료 : 해당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how)비용과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여 사업년도로부터 이연상각(移延償却)하되 그 적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 7) 연구개발비 : 해당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비로서 시험·시범 제작에 소요된 비용이나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용역비와 법령에 따른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생산수량에 비례하여 배분 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중 장래 계속생산으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 8) 시험검사비 :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한 직접적인 시험검사비로서 외부에 이를 의뢰하는 경우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다만,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내부검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자체 시험검사비로 반영할 수 있다.
- 9) 지급입차료 :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술, 기구 등의 사용료로서 해당 계약 물품의 생산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 10) 보험료 :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 11) 복리후생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 종업원 등에게 지급되는 의료위생 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중식과 간식제공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작업조건유지에 직접 관련되어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 12) 보관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반영해야 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 13) 외주가공비 :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부분품

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와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 15) 소모품비 :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 16) 여비·교통비·통신비 : 작업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와 차량유지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 17) 세금과 공과금 : 공장이 해당 계약목적물의 제조와 직접 관련하여 부담할 재산세, 차량세 등의 세금과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 18) 폐기물처리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19) 도서인쇄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를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 20) 지급수수료 :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수수료에 한하며, 다른 비목에 반영되지 않는 수수료를 말한다.
- 21) 그 밖의 법정경비 : 위에서 열거한 항목 외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

6. 일반관리비

가. 의의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영업비용 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소요비용(임원과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 공과금,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산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산정한다.

나. 일반관리비 반영방법

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재료비·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별표1>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일반관리비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7. 이윤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제조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와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율 25%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제3관 공사 원가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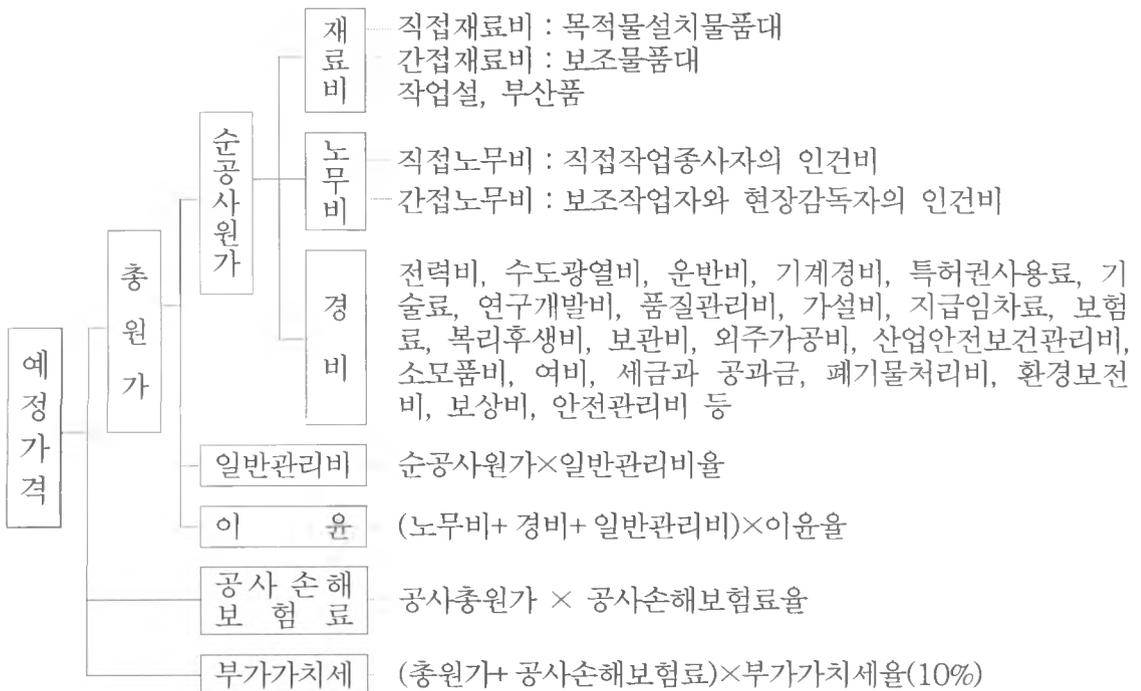
1. 공사원가

공사원가는 공사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작성방법

공사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공사원가계산서의 일반관리비나 이윤의 다음 비목으로 반영해서는 아니 된다.

3. 공사원가의 체계



4. 재료비

가. 직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 1) 주요재료비 :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 2) 부분품비 : 공사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 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와 “6-다-13)” 외주가공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나. 간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 1) 소모재료비 : 기계오일·접착제·용접가스·장갑 등 소모성물품의 가치
-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 내용년수 1년 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소득세법에 따른 상당금액 이하인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 3) 가설재료비 : 비계, 거푸집, 동바리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그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의 가치

다. 부대비용의 처리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 재료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라. 재료비의 공제

계약목적물의 시공 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이나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한다.

5. 노무비

가. 노무비의 내용은 제5절의 제1관 “3”과 제2관 “4”를 준용한다.

나. 공사의 경우 간접노무비의 계산방법

1) 직접반영방법

가) 반영기준

발주목적물의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 간접노무비 = 노무량 × 노무비단가

나) 반영방법

- (1) 노무비단가는 「통계법」 제4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가격(시중노임단가 등)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일정기간 이상 근로하는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 상여금(기본급의 년 400%)을 반영한다.
- (2) 노무량은 품셈에 따라 반영되는 노무량을 제외하고, 현장관리사무소에서 현장시공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량을 반영한다.
- (3)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이 되는 배치인원은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 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 관리원, 공구 담당원, 시험 관리원, 교육·산재 담당원, 복지후생부문 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이다.
- (4) 노무량은 공사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을 산정하고, 설계서(설계도면, 설계설명서, 현장설명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비율분석방법

가) 반영기준

발주목적물에 대한 직접노무비를 품셈에 따라 반영하고,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text{간접노무비} = \text{직접노무비} \times \text{간접노무비율}$$

나) 반영방법

- (1) 발주목적물의 특성(규모·내용·공종·기간 등) 등을 고려하여 이와 유사한 실적이 있는 업체의 원가계산 자료인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 또는 직접·간접 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다.
- (2) 노무비 명세서(임금대장)를 이용한 간접노무비율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에 대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를 확보한다.
 - (나) 확보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의 직·간접노무비를 구분하되, 구분할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간접노무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만 분석한다.

(대)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에서 품셈에 따라 반영되는 노무량을 제외하고, 현장관리사무소에서 현장시공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비(간접노무비)를 계산한다.

(라) 계산된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로 나누어 간접노무비율을 산출한다.

(3) 직접·간접 노무비가 구분된 「직접·간접 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 경우에는 “(2)”의 임금대장을 이용한 간접노무비율 계산방법에 따라 자료와 내용을 검토하여 간접노무비율을 계산한다.

3) 그 밖의 보완적 반영방법

직접반영방법이나 비율분석방법에 따라 간접노무비를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목적물의 내용·특성 등으로 인하여 원가계산 자료를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확보된 자료가 신빙성이 없어 원가계산 자료로서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의 원가계산 자료(공사종류 등에 따른 간접노무비율)를 참고로 활용하여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의 특성을 고려한 간접노무비율을 산출하고, 간접노무비는 품셈에 따른 직접노무비에 산출한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구 분	공사종류별	간접노무비율	비고
공사종류별	건축공사	14.5	
	토목공사	15.0	
	특수공사(포장, 준설 등)	15.5	
	그 밖의 공사(전문·전기·통신 등)	15.0	
공사규모별	50억 원 미만	14.0	
	5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15.0	
	300억 원 이상	16.0	
공사기간별	6개월 미만	13.0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15.0	
	12개월 이상	17.0	

※ 공사규모가 100억 원이고 공사기간이 15개월인 건축공사의 경우

[예시] 간접노무비율 = (15% + 17% + 14.5%) / 3 = 15.5%

6. 경비

가. 경비의 개념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나. 경비의 산출

경비는 해당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활용하여 산정해야 한다.

다. 경비의 세비목

- 1) 전력비, 수도광열비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
- 2) 운반비 :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반재료·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 3) 기계경비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품셈의 건설기계의 경비 산정기준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 4) 특허권사용료 :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한 경우에 지급되는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 5) 기술료 :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how)비용과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여 사업년도로부터 이연상각(移延償却)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 6) 연구개발비 :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비로서 시험·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이나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 용역비와 법령에 따른 기술개발촉진비와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중 장래 계속시공으로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 7) 품질관리비 :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과 계약

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하며, 품질시험과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른 비목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다.

- 8) 가설비 :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소, 화장실 등 그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비, 재료비 포함)을 말한다.
- 9) 지급임차료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건설기계를 제외한다)의 사용료를 말한다.
- 10) 보험료 :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고, 그 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보험료는 제외한다. 다만 공사손해보험료는 제5절 제3관 "9"에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반영된다.
- 11) 복리후생비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종사하는 노무자·종업원·현장사무소 직원 등에게 지급되는 의료위생 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 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어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 12) 보관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반영해야 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다.
- 13) 외주가공비 :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외주가공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와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 15) 소모품비 :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용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다.
- 16) 여비·교통비·통신비 : 시공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와 차량유지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 17) 세금과 공과금 : 시공현장에서 해당 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부담할 재산세, 차량세, 사업소세 등의 세금과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 18) 폐기물처리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19) 도서인쇄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및 공사시공기록책자 제작비등을 말한다.
- 20) 지급수수료 : 시행령 제5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3항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 법령으로서 지급이 의무화된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 중 최저요율을 적용하여 반영한다.
- 21) 환경보전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따라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비용을 말한다.
- 22) 보상비 : 해당 공사로 인해 공사현장에 인접한 도로·하천·그밖의 재산이 훼손되거나 지장물을 철거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보수비를 말한다. 다만, 해당 공사를 위한 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
- 23) 안전관리비 :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 2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비 :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5절의 제2관 “4-가-4)”와 제3관 “5-가”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하여 반영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다.
- 25) 그밖의 법정경비 : 위에서 열거한 항목 외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

7.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의 내용은 제5절 제2관 “6”과 같고 <별표 1>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이 공사규모별로 체감 적용한다.

종합공사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50억 원 미만	6.0	5억 원 미만	6.0
5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5.5	5억 원 이상 ~ 30억 원 미만	5.5
300억 원 이상	5.0	30억 원 이상	5.0

8. 이윤

-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와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율 15%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 나.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9. 공사손해보험료

가. 공사손해보험료의 개념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총 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사손해 보험료율을 곱하여 반영한다.

* 공사손해보험료 = 총공사원가 × 손해보험료율

나. 공사손해보험료의 산출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 공사부분의 총 공사원가와 관급자재를 합한 금액에 공사손해보험료율을 곱하여 반영하며 보험료율은 계약담당자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한다.

제4관 학술용역 원가계산

1. 용어의 정의

가.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

을 말한다.

- 1)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 2)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 3)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나. 책임연구원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라. 연구보조원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마. 보조원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원가계산 비목

원가계산은 노무비(이하 “인건비”라 한다), 경비, 일반관리비등으로 구분 작성한다. 다만, 공동연구형 용역과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경비항목 중 최소한의 필요항목만 반영하고 일반관리비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3. 원가계산 작성방법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서 정한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4. 인건비

가. 개념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를 기준하여 <별표 2>에서 정한 기준단가와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인건비 산정기준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단가로 한다.

5. 경비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내용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및 감가상각비를 말한다.

가. 여비

1) 여비의 반영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반영하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반영할 수 없다.

2) 국내여비의 반영

시외여비만을 반영하되 연구에 필요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책임연구원은 「공무원 여비규정」 제3조 관련 별표 1(여비 지급 구분표) 제1호 등급,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은 같은 표 제2호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유인물비 : 계약 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 복사비(지대 포함)를 말한다.

다. 전산처리비 :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와 그 부대비용을 말한다.

라. 시약·연구용 재료비 : 실험실습에 필요한 해당 비용을 말한다.

마. 회의비 :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참석자의 수당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조례, 규

칙 등으로 정한 위원회 위원수당 기준을 준용한다.

- 바. 임차료 :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 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은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사. 교통통신비 :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 아. 감가상각비 :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기계장치에 대하여 제5절 제2관 “5-다-3)”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단, 임차료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6. 일반관리비 등

가. 일반관리비의 반영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일반관리비율 5%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이윤

- 1) 영업이익을 말하며,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이윤율 10%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 2)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7. 계약담당자의 주의의무

- 가. 학술연구용역을 의뢰할 때에는 해당 연구에 대한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를 엄선하여 연구목적은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 나. 계약담당자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급여명세서, 손익계산서 등)를 활용하여 “4”의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과 “6-가”의 일반관리비가 과다 반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5관 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1. 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 가.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나. 원가계산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그 밖의 용역은 “가”와 제5절 제4관의 학술용역 원가계산 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순용역(원가계산 기준이 없는 경우에 한함)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 중 보통인부 노임으로 하고,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 시 주요기준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한국SW산업협회)
- 측량용역 대가의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건설공사 감리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설계·감리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 산정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공공 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측량대가의 기준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 공무원 여비규정 (대통령령-안전행정부 소관)
- 노임단가 기준
 - 시중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 제조업 노임단가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보고서)
 - 측량기술자 임금 공표 (국토교통부, 대한측량협회)
 - 감리원 임금 공표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감리협회)
 - S/W 기술자 노임단가 (한국SW산업협회)

◆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 시 경비의 세비목별 요율 산출 참고자료

- 산업재해보험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 보험료율 (고용노동부 고시)

- 고용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2조)
- 폐기물처리비
 - 폐기물관리법 제3조의2(폐기물관리의 기본원칙), 동법 시행령 제2조(사업장의 범위),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 폐기물관리법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와 동법 시행규칙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등)
- 공사이행보증 수수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계약의 이행보증)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과 대금지급 보증)
- 환경보전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6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 품질관리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14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 감가상각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5, 별표6호의 기준내용연수 적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동시행령 제26조의6, 동시행규칙 제32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 안전관리비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제8항, 동시행규칙 제51조 안전관리비)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와 동법 시행령 제83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소관)

제6절 실적공사비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칙

1. 의의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공사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된 가격을 말한다.

2. 적용범위

실적공사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다만, 소규모공사, 전문공사, 보수·유지관리공사,

건물의 증·개축공사, 복합건축시설물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임 하에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 실적공사비 자료관리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적공사비 자료의 축적을 위하여 실시설계용역의 성과품 중 설계예산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및 수량산출서 등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공종 및 단가」와 품셈 등의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할 경우에는 실적공사비 단가와 품셈 등에 의해 산출된 단가가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4. 실적공사비 예정가격

실적공사비의 예정가격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5. 실적공사비 예정가격의 작성

가. 계약담당자는 실적공사비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예정가격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총괄 집계표를 작성해야 한다.

나. 실적공사비에 따른 예정가격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정한 기준 등에 따른 산출근거를 첨부해야 한다.

6.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계약담당자가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제2절 “6”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제2관 실적공사비 원가계산

1. 직접공사비

가. 직접공사비란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계약목적물을 세부 공종(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정한 수량산출기준에 따라 공사를 작업 단계별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별로 구분하여 공종별 단가에 수량(계약목적물의 설계서 등에 의해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단위와 방법으로 산출된 공사량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 직접공사비 = 수량 × 공종별 단가

나. 직접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한다.

1) 재료비

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거나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를 말한다.

2) 직접노무비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직접공사경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계경비, 운반비, 전력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관비, 외주가공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보상비,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폐기물처리비 및 안전점검비를 말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제5절 제3관 “6”을 준용한다.

다. “가”의 공종별 단가를 산정할 때 재료비나 직접공사경비 중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외 할 수 있는 금액은 별도로 해당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해야 한다.

라. 직접공사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기관이 공종별로 직접공사비 범위 안에서 조사집계하여 비치한 금액을 활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2. 간접공사비

가. 간접공사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법정경비와 그 밖의 부수적인 비용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총액에 비용별로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간접공사비는 다음 항목의 비용을 포함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제5절의 제2관 “4-나”와 제3관 “6”을 준용한다.

1) 간접노무비

2) 산재보험료

- 3) 고용보험료
 - 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 5) 안전관리비
 - 6) 환경보전비
 - 7) 국민건강보험료
 - 8) 국민연금보험료
 - 9) 그 밖의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로서 공사 원가 계산에 반영토록 명시된 법정경비
 - 10) 그 밖의 간접공사경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도서인쇄비 및 지급수수료를 말한다.)
- 다. “가”의 일정요율이란 관련법에 의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법정요율을 말한다. 다만 법정요율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통계자료 중 다수기업의 평균치 등을 토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가 정한다.
- 라. “1”에 따라 산정되지 아니한 공중에 대하여도 간접공사비 산정은 “가”부터 “다”까지를 적용한다.

3. 일반관리비

- 가.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종류에 대하여는 제5절 제2관 “6-가”를 준용한다.
- 나. 일반관리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일반관리비율은 공사규모별로 아래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종합공사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및 그 밖의 공사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율(%)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율(%)
50억 원 미만	6.0	5억 원 미만	6.0
5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5.5	5억 원 이상 ~ 30억 원 미만	5.5
300억 원 이상	5.0	30억 원 이상	5.0

4. 이윤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이윤율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나.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5. 공사손해보험료

제5절 제3관 “9” 공사손해보험료와 제1장 제5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에 따른 공사손해보험가입 비용을 말한다.

제7절 원가계산 관련기관

제1관 원가계산용역기관

1. 원가계산용역기관 요건

가.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이하 “용역기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기관은 “나”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용역대상기관

-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출연한 연구기관
-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 3) 「민법」, 그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 4)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다. 용역기관 요건

- 1) 정관(학칙, 연구소 규정 등) 중 목적 등에 원가계산업무가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 2) 구성인력은 다음 항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1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가) 원가계산과 원가검토 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하 “경력”이라 함)이 5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3년 이상인 자 4인 이상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제도와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 포함)

- 나) 이공계 대학 학위소지자나 이공계로서 <별표 3>의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 다) 상경대학 학위소지자나 상경계로서 <별표 3>의 상경계열 자격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 라)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 인원은 대학(교) 직원이나 그 부설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인원 중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으로 한다.
- 3) 기본재산(최근연도 정기 결산서에 따른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원(학교 연구소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5천만원)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실질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2. 원가계산용역 의뢰 시 주의사항

- 가.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용역을 의뢰할 때 “1”에 정한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1”의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들의 단체로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 해당 용역기관의 장과 다음 항목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사항을 준용하여 각서 등을 징구해야 한다.
 - 1) 부실 원가계산 시 그 책임에 관한 사항
 - 2)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 3) 원가계산 내용의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 4) 그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다. 계약담당자는 최종원가계산서에 해당 용역기관의 장 [대학(교)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소장] 과 책임연구원이 직접 확인·서명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 라. 계약담당자는 용역기관에서 제출한 최종 원가계산서의 내용이 지방계약법령과 이 예규 제2장 및 계약서 등의 용역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원가계산의 적정을 기해야 한다.

- 마. 계약담당자는 본사 이외에 지사, 지부, 출장소 또는 연락사무소 등과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자격요건 심사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한 경우 또는 원가계산용역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원가계산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당 용역기관의 주무관청 등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2관 원가검토기관

1. 원가검토기관 요건

가.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른 원가검토기관(이하 “원가검토기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기관은 “나”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원가검토대상기관

-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출연한 연구기관
-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 3) 「민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이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4)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다. 원가검토기관의 요건

- 1) 정관(학칙, 연구소 규정 등) 중 목적 등에 원가검토업무가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 2) 구성인력은 다음 항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1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가) 원가계산과 원가검토 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 6년 이상인 자 1인 이상, 5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3년 이상인 자 3인 이상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제도와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 포함)

나) 이공계 대학 학위소지자나 이공계로서 <별표 3>의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에 따른 중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다) 상경대학 학위소지자나 상경계로서 <별표 3>의 상경계열 자격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라)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인원은 대학(교) 직원이나 대학(교) 부설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인원 중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으로 한다.

3) 기본재산(최근연도 정기 결산서에 따른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원(학교 연구소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5천만원)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실질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라. 원가검토기관의 사무위탁 범위

-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원가산정내용의 적정성 여부 검토
- 2)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설계서, 과업이행요청서, 법 제22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과 관련된 원가산정내용의 적정성 검토
- 3)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가계산과 예정가격 작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원가검토 위탁 시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1”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 중에서 해당 사무의 수행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과 위탁수수료와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원가계산용역을 수행한 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용역에 대한 원가검토를 위탁할 수 없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위탁받은 원가검토사무를 수행할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때 다음 항목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특히 지방계약법령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탁받은 계약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협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이 전문기관에게 있다는 것을 협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사항을 준용하여 각서 등을 징구해야 한다.

- 1) 부실 원가검토 시 그 책임에 관한 사항
 - 2)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 3) 원가검토 내용의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 4) 그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다. 계약담당자는 최종 원가 검토서에 해당 원가검토기관의 장 [대학(교) 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소장] 과 책임연구원이 직접 확인·서명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 라. “가”의 위탁수수료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 그 사무 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일반관리비 등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사무의 위탁에 따른 이행보증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51조를 준용할 수 있다.
- 마.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기관에서 제출한 최종원가검토서의 내용이 지방계약법령, 이 예규 제2장 및 계약서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원가검토의 적정을 기해야 한다.
- 바.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용역을 의뢰할 때 “1”에 정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1”의 요건을 갖춘 원가검토기관들의 단체로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그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 사. 계약담당자는 본사 이외에 지사, 지부, 출장소 또는 연락사무소 등과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기관이 자격요건 심사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한 경우 또는 원가검토용역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원가검토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당 용역기관의 주무관청 등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8절 보 칙

1. 특례사항

계약담당자는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 장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2. 자료 비치 등

가. 원가계산 자료의 비치와 활용

- 1)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계약상대자로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2개 업체 이상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수의계약 대상업체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의 계약목적물에 관계되는 수치 또는 그 업체의 제조(공정)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제조(공사)원가의 비목별 가격 결정과 일반관리비 반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적용할 수 있다.
- 2) 계약담당자는 공사원가계산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품셈을 공사원가의 비목별 가격결정의 기초자료로 적용할 수 있으며, 그 품셈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을 준용한다.

나.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의 환율적용

- 1)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을 산출할 때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3. 세부 시행기준

- 가. 이 장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안전행정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별표 1>

일 반 관 리 비 율

업 종	일반관리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식료품의 제조·구매 14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8 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매 9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14 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제품의 제조·구매 8 비금속광물제품 제조·구매 12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6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7 그 밖의 물품 제조·구매 11 ◦ 시설공사업 6 	

주1) 업종 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별표 2>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2014년 기준)

등 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월 3,018,785원
연구원	월 2,314,762원
연구보조원	월 1,547,342원
보조원	월 1,160,546원

-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주2) 위 단가는 2014년도 기준단가이며, 2015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위 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별표 3>

원가계산용역과 원가검토기관 관련 기술자 등급과 자격기준

구분 \ 기준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	상경계열 자격기준	비고
기술사	기술사	-	
특급기술자	기사 10년 이상 산업기사 13년 이상	박사 3년 이상, 석사 9년 이상, 학사 12년 이상, 전문대졸 15년 이상	
고급기술자	기사 7년 이상 산업기사 10년 이상	박사, 석사 6년 이상, 학사 9년 이상, 전 문대졸 12년 이상, 고졸 15년 이상	
중급기술자	기사 4년 이상 산업기사 7년 이상	석사 3년 이상, 학사 6년 이상, 전문대졸 9년 이상, 고졸 12년 이상	
초급기술자	기사, 산업기사	석사, 학사, 전문대졸, 고졸 3년 이상	
고급기능사	기능장 산업기사 4년 이상 기능사 7년 이상 기능사보 10년 이상	기능대졸 4년 이상, 전문대졸 4년 이상, 고졸 7년 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 수후 7년 이상, 기능실기시험 합격 후 10년 이상	
중급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사 3년 이상 기능사보 5년 이상	기능대졸, 전문대졸, 고졸 3년 이상, 직 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후 5년 이상, 기 능실기시험 합격 후 5년 이상, 그밖에 10년 이상	
초급기능사	기능사, 기능사보	고졸,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자, 기능 실기시험 합격자, 그밖에 5년 이상	

주1) 기술자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와 동법 시행령 제2조
에 정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자로 한다.

2) 한국과학기술원 기술용역기술사과정 이수자는 중급기술자로 한다.

3) 교육부장관이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학력경험의 기준에
따른다.

4) 학력경험의 기준은 관련분야에 종사하여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 조 원 가 계 산 서

품명 :

생산량 :

규격 :

단위 :

제조기간 :

비 목		구 분	금액	구성비	비고	
제 조 원 가	재 료 비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작업설·부산물 등(△)			
			소 계			
	노 무 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소 계			
	경 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 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그밖의 법정경비						
		소 계				
일 반 관 리 비 ()%						
이 윤 ()%						
총 원 가						

<별지 제2호 서식>

공사원가계산서

공사명 :

공사기간 :

비 목		구 분	금액	구성비	비고
재 료 비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작업설·부산물 등 (△) 소 계				
노 무 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소 계				
순 공 사 원 가 경 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 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보상비					
안전관리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그밖의 법정경비					
	소 계				
일반관리비		[(재료비+노무비+경비)×()%]			
이 유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중 원 가					
공사손해보험료		보험가입대상공사부분의중원가×()%			

<별지 제3호 서식>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

구 분	금 액	구성비	비 고
인건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경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이 윤()%			
총 원 가			

<별지 제4호 서식>

원가계산과 원가검토용역 수행에 따른 보안각서

본인은 20 년 월 일 ~ 월 일까지 「〇〇사업」의 원가계산(검토)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〇〇사업명」의 원가계산(검토)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 수행의 내용과 결과 등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민·형사상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참 여 자 :

성 명 : (인)

성 명 : (인)

〇〇사·도 경리관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실적공사비 총괄 집계표

공사명 :

공사기간 :

구 분	금 액	구성비	비 고
직 접 공 사 비			
간 접 공 사 비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그 밖의 법정경비			
일 반 관 리 비			
이 윤			
공사손해보험료			
부 가 가 치 세			
합 계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순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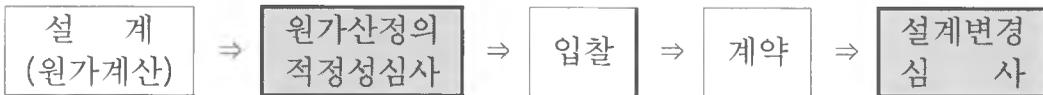
- 제1절 계약심사제도의 의의
- 제2절 계약심사대상 사업
- 제3절 계약심사업무 처리절차
- 제4절 원가심사
- 제5절 설계변경 심사
- 제6절 보칙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제1절 계약심사제도의 의의

1. 계약심사제도의 개념

가.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이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0조 제3항과 제74조 제8항에 따라 예정가격(기초금액 포함)과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계약심사제도의 운영

가. 시·도는 “1-나”의 심사업무를 위하여 계약심사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하며, 시·군·구는 계약심사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나. 계약심사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나”의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1-나”의 심사업무를 할 때 금액의 과다·과소 산정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목적물의 품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3. 계약심사의 구분

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금액을 작성할 때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원가산정의 적정성 심사(이하 “원가심사”라 한다)를 해야 한다. 원가심사의 주요 심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설계서간 불일치 사항 여부
- 2) 원가계산 작성방식 및 실적공사비 적용의 적정성
- 3) 표준품셈 등 대가 산정기준 적용의 적정성
- 4) 각종 법정경비요율의 적정성

- 5) 가격정보, 전문가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견적가격 등 가격결정의 적정성
 - 6) 산출된 물량의 적정 산출 여부
 - 7) 그밖에 심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검토 등
- 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사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증감금액의 적정성 심사(이하 “설계변경심사”라 한다)를 해야 한다.

4. 유사중복 업무의 연계 추진

-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심사 기능과 통합 또는 연계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아래와 같은 기능을 통합 또는 연계할 수 있다.
- 1) 설계 경제성검토(VE) 기능
 - 2) 설계 및 공법의 적정성 검토
 - 3) 신기술·신공법의 적용 가능성 검토
 - 4) 그밖에 계약심사로 갈음할 수 있는 업무
-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심사업무가 다른 법령에 따른 업무와 유사한 경우에는 법령 범위 안에서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심사대상 사업

1.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 가. 시·도는 다음 대상기관의 사업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계약심사를 해야 한다.
- 1) 시·도 계약심사 대상기관
 - 가) 시·도 본청 및 사업소 사업
 - 나) 시·도 설립 지방공기업 사업
 - 다) 시·도 출연기관(단, 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사업
 - 라) 시·군·구 사업 중 시·도비 또는 국비보조사업
 - 2) 시·도 계약심사 대상사업

심사내용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원가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 추정금액 5억 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 원) 이상 ▫ 용역 : 추정금액 2억 원 이상 ▫ 물품 : 추정금액 2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심사	▫ 계약금액 20억 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나. 시·군·구는 다음 대상기관의 사업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계약심사를 해야 한다.

1) 시·군·구 계약심사 대상기관

가) 시·군·구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 사업

나) 시·군·구 설립 지방공기업 사업

다) 시·군·구 출연기관(단, 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사업

2) 시·군·구 계약심사 대상사업

심사내용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원가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 추정금액 3억 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2억 원) 이상 ▫ 용역 : 추정금액 7천만 원 이상 ▫ 물품 : 추정금액 2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심사	▫ 계약금액 5억 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다.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2-다-2)-나)”에 따라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내지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심사를 통해 신기술 등의 반영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임의적 심사대상 사업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외에 심사대상 금액이나 심사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등으로 그 내용을 정해야 한다.

나. 설계변경 심사 중 설계변경 여부에 대한 타당성 심사는 사업부서가 요청하는 경우 계약심사부서에서 그 요청 건에 대한 심사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심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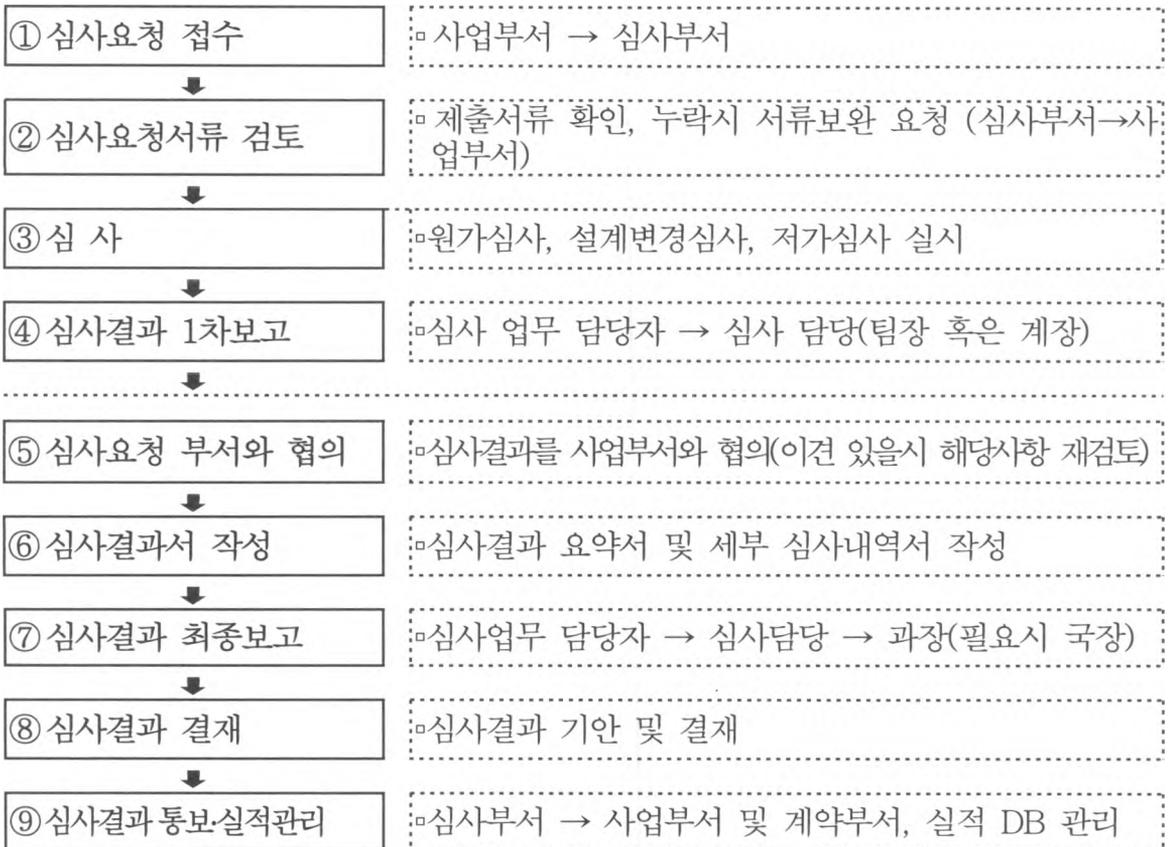
3. 심사제의 대상 사업

- 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성되어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거나, 행정절차가 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에서 추진하거나 시급한 국가사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심사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1)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 2)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 3)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구매는 제외 가능 예시) 상품권, 유류, 종량제 봉투, 예술품 등
 -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나”의 “1)·4)”에 해당하는 경우를 판단할 때 계약심사부서(시군구의 경우 시도의 계약심사부서)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심사업무를 법 제7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는 “나”의 “4)”에 해당하는 경우로 본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 사전검토)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
 -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에 준하는 업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제3절 계약심사업무 처리 절차

- 1.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부서, 계약심사부서(시군구의 계약심사 업무담당자 포함), 계약부서는 효율적인 재정운동을 위하여 상호 협력해야 한다.
 - 가. 사업부서는 계약심사 요청 전에 제출서류를 확인하면서 설계서간 불일치 사항 또는 산출된 물량의 적정 여부 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 나. 계약부서는 계약심사부서의 심사결과와 달리 사업부서에서 계약을 의뢰한 경우 예정가격조서 상에 조정내용 및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2. 사업부서에서 심사 요청한 서류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계약심사부서에서 보완 요청을 한 경우 그 소요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3. 심사결과에 대하여 사업부서가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견내용을 계약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제4절 원가심사

제1관 공사분야 원가심사

1. 심사대상 공사의 분류

- 가. 공사분야 계약심사담당자는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설계서간 불일치 사항, 품셈 등 대가 산정기준과 단가 적용의 적정성, 불필

요한 공종 포함 여부 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과다과소 산정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조정해야 한다.

나. 심사대상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그 밖의 공사로 분류한다.

- 1) 건설공사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 및 환경시설 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 조성공사를 포함), 기계설비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 2)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라 전기설비 (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한다.
- 3)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말하고, 정보통신설비는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 4)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말한다.
- 5) 문화재수리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지정문화재(무형문화재는 제외), 가지정문화재,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의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
- 6) 그 밖의 공사는 위 “1)”부터 “5)”까지 정한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로 지하수 개발, 소음·진동 방지시설 설치공사, 오수처리 시설 설치공사 등을 말한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외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나-6)”의 그 밖의 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 심사 절차

가.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심사담당

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부서는 그 보완요구에 응해야 한다.

1) 계약심사 요청서

2) 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과업내용서

3) 설계내역서(비목별 기초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기계경비산출서,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견적서 등)

4) 그밖에 필요한 서류

▫ 소프트웨어 참고자료(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품셈을 적용한 내역서와 실적공사비를 적용한 내역서

▫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한 경우 관련자료

▫ 방침서, 계획서, 기술심사조건 등 그밖의 보조자료

나. 계약심사담당자는 관련 법령 및 대가기준, 그밖의 심사 참고자료에 따라 산정내용의 적정성, 가격의 과다·과소 등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이때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2)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 등)

3) 표준품셈, 실적공사비

4) 그밖의 법정요율

5) 거래실례가격(가격정보 등)

6) 그밖의 심사 참고자료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나”에 따라 기초금액을 확정할 때 불가피하게 원가계산방법으로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작성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라.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심사내용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확정해야 한다.

마. 계약심사담당자는 “라”에 따라 확정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 바. 사업부서는 “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업 건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효율성을 위하여 그 변경된 내용만을 발췌하고 그에 대한 추가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 사. “바”에도 불구하고 재심사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는 계약부서에 그 이견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3. 실적 관리

- 가.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해당 심사 건에 대한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하며, 사업부서에 심사결과 통보시 그 서류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결정에 따라 불필요한 서류를 반환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
- 나. 사업부서는 해당 사업 건에 대한 계약심사 전·후의 서류를 사업 종료 후 감사 등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까지 보관해야 한다.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은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3년으로 한다.
-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심사 통보일을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의 통계 기준에 따라 심사한 실적을 취합하고 관리해야 한다. 동일 사업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 실적은 최종 심사통보일 및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단일 건으로 취합한다.
- 라. 중앙행정기관에서 “다”의 실적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그 취합자료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하며, 보완사항에 대한 추가조치가 있을 때에는 정한 기한 안에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2관 용역분야 원가심사

1. 심사대상 용역의 분류

- 가. 용역분야 계약심사담당자는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과업 내용서와 설계내역서 등을 근거로 대가 산정기준과 단가 적용의 적정성, 불필요한 비목 포함 여부 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

었는지 확인하고, 과다과소 산정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조정해야 한다.

나. 심사대상 용역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절 “3”에 따라 기술용역, 학술용역, 일반용역으로 분류한다.

- 1) 기술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 2)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 3) 일반용역이라 함은 기술용역과 학술연구용역을 제외한 모든 용역을 말한다.

2. 심사 절차

가.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심사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부서는 그 보완요구에 응해야 한다.

- 1) 계약심사 요청서
- 2) 과업내용서
- 3) 설계내역서(비목별 기초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견적서 등)
- 4) 그밖에 필요한 서류
 - 소프트웨어 참고자료(엑셀 내역화일 등)
 - 방침서, 계획서 등 그밖의 보조자료

나. 계약심사담당자는 관련 법령 및 대가기준, 그밖의 심사 참고자료에 따라 산정내용의 적정성, 가격의 과다과소 등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이때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 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 2)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 등)

- 3) 표준품셈
- 4) 그 밖의 법정요율
- 5) 거래실례가격(가격정보 등)
- 6)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

-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나”에 따라 기초금액을 확정할 때 불가피하게 원가계산방법으로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작성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 라.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심사내용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용역수행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협의하여 확정해야 한다.
- 마. 계약심사담당자는 “라”에 따라 확정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 바. 사업부서는 “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업 건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효율성을 위하여 그 변경된 내용만을 발췌하고 그에 대한 추가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 사. “바”에도 불구하고 재심사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는 계약부서에 그 이견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3. 실적 관리

- 가. 용역분야 원가심사의 실적관리는 제1관 “3”을 준용한다.

제3관 물품분야 원가심사

1. 심사대상 물품의 분류

- 가. 물품분야 계약심사담당자는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규격서와 설계내역서 등을 근거로 대가 산정기준과 단가 적용의 적정성, 불필요한 비목 포함 여부 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과다과소 산정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조정해야 한다.

나. 심사대상 물품은 물품의 제조·구매와 완제품의 구매로 분류한다.

- 1) 물품의 제조·구매는 별도의 주문에 따라 제작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해당 제조업자만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2) 완제품의 구매는 이미 제조되어진 완성품을 그대로 구입하는 것으로 제조업자는 물론 도·소매업자도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심사 절차

가.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심사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부서는 그 보완요구에 응해야 한다.

- 1) 계약심사 요청서
- 2) 산출기초조사서
- 3) 규격서, 설명서(사양서) 등
- 4) 설계내역서(제조원가계산서, 일위대가표 등)
- 5) 그밖에 필요한 서류
 - 과업내용서, 설계설명서(시방서) 등
 -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원, 수입물품원가계산서 등
 - 수리의 경우 수리명세서, 수리단위별 내역서 등
 - 임차의 경우 임차대상기간·장소 및 임차조건 등
 - 시장제고, 유통여부 등 그 밖의 참고자료

나. 계약심사담당자는 관련 법령 및 대가기준,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에 따라 산정내용의 적정성, 가격의 과다·과소 등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이때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 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 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 2)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 등)
- 3) 표준품셈
- 4) 그 밖의 법정요율
- 5) 거래실례가격(가격정보 등)
- 6)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

-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나”에 따라 기초금액을 확정할 때 불가피하게 원가계산방법으로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작성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 라.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심사내용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를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협의하여 확정해야 한다.
- 마. 계약심사담당자는 “라”에 따라 확정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 바. 사업부서는 “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업 건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효율성을 위하여 그 변경된 내용만을 발췌하고 그에 대한 추가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 사. “바”에도 불구하고 재심사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는 계약부서에 그 이견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3. 실적 관리

- 가. 물품분야 원가심사의 실적관리는 제1관 “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절 설계변경 심사

1. 설계변경 심사의 대상

- 가. 설계변경심사는 사업부서에서 공사의 시공 중에 예측하지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계획의 변경 등으로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계약심사부서에서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 나. “가”의 적정성 검토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운반거리 변경 등 설계변경 심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다. 설계변경 심사 대상은 계약금액(설계변경 전의 계약금액)이 사도는 20억 원(사군구는 5억 원) 이상인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

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의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외에 심사대상 금액이나 심사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마. 사업부서에서 설계변경심사를 요청하는 1회 설계변경의 기준은 제13장 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7절 “1-가-2)”의 ‘설계변경 당시’ 정의에 따라 판단한다.

바. 설계변경심사 제외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 1) 재해 및 재난복구사업으로서 사업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항구복구사업으로서 심사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 실시)
- 2) 계약부서(또는 사업부서)에서 이미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우선 시공을 한 설계변경으로 설계변경심사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 3) 그밖에 사업부서에서 계약 특성상 설계변경 심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자치단체 계약심사부서와 사전 협의하는 경우

2. 설계변경심사의 절차

① 심사요청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부서 → 심사부서(총괄담당) ※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기 전에 신청
② 심사요청서류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대상 여부 확인, 제출서류 누락여부 확인, 내역화일 확인 ▣ 제출서류 누락시 사업부서에 보완지시, 담당별 서류배분
③ 심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변경 조서, 원가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서, 단가조사서, 기계경비 산출서, 설계도면 등 검토
④ 심사결과 1차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조분야 심사내역 수합(토목, 기계, 조정 등) ▣ 심사 업무 담당자 → 심사 담당(팀장 혹은 계장),
⑤ 심사요청 부서와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결과를 사업부서와 협의(이견 있을시 해당사항 재검토)
⑥ 심사결과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결과 요약서 및 세부 심사 내역서 작성
⑦ 심사결과 최종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업무 담당자 → 계약심사담당 → 과장(필요시 국장)
⑧ 심사결과 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결과 기안 및 결재
⑨ 심사결과 통보 및 실적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부서 →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 ▣ 심사결과 및 실적 DB 관리

3. 심사의 요청

가.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심사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부서는 그 보완요구에 응해야 한다.

- 1) 계약심사 요청서
- 2) 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과업내용서
- 3) 설계내역서(비목별 기초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기계경비 산출서,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견적서 등)
- 4) 그밖에 필요한 서류
 - ▣ 소프트웨어 참고자료(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 ▣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품셈을 적용한 내역서와 실적공사비를 적용한 내역서
 - ▣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한 경우 관련자료
 - ▣ 설계변경 이유조서 등 그 밖의 보조자료

4. 주요 검토사항

구분	검토 사항
가. 설계변경의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로 발주해야 할 사항이 아닌지 여부 ◦ 설계변경이 불가피한지 여부 ◦ 향후 동일 내용으로 설계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지 여부 등
나. 설계변경 물량(수량) 산출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리, 기간, 위치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물량(수량) 산출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다. 설계변경 공법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변경에 따른 신기술, 신공법 등을 적용하는 경우 신기술, 신공법의 적정성 여부
라. 설계변경 단가산출의 적정성 및 설계서간 모순이 없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변경 물량에 대한 일위대가서, 단가산출의 적정성 ◦ 설계변경물량의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설계설명서(시방서) 등과의 일치여부
마. 설계변경에 따른 자재 등의 적합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변경되어 증가되는 부분, 주요자재의 규격·품질·수량의 적정성 여부
바. 설계변경을 위한 관련 법령 검토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변경에 따른 환경 관련 법령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검토

5. 심사결과 통보

- 가. 계약심사담당자는 확정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 나. “가”의 심사결과서는 심사결과요약서, 분야별 심사내역서, 그 밖의 심사조건을 말한다.
- 다. 심사결과는 아래와 같은 유형으로 통보해야 한다.

원안 통과	수정	재검토
◦ 심사요청 내용대로 설계 변경(원안 통과)	◦ 심사요청 내용을 수정하여 설계변경	◦ 설계변경에 대해 재검토 지시 ※ 재검토 사유명기

- 라. 심사결과가 재검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자료를 정리하여 횡수에 제한 없이 다시 심사요청을 할 수 있다.
- 마. 심사결과가 수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부서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그 사유를 첨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6. 실적 관리

- 가.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해당 심사 건에 대한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하며, 사업부서에 심사결과 통보 시 그 서류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결정에 따라 불필요한 서류를 반환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
- 나. 사업부서는 해당 사업 건에 대한 계약심사 전·후의 서류를 사업 종료 후 감사 등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까지 보관해야 한다.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은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3년으로 한다.
-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심사통보일을 기준으로 중앙부처의 통계 기준에 따라 심사한 실적을 취합하고 관리해야 한다. 동일 사업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 실적은 최종 심사통보일 및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단일 건으로 취합한다.
- 라. 중앙부처에서 “다”의 실적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그 취합자료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하며, 보완사항에 대한 추가조치가 있을 때에는 정한 기한 안에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6절 보칙

제1관 계약심사 시 주의할 사항

1. 계약심사 심사금액 산정

- 가.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그 대가기준의 적용기준일 판단일은 계약심사 요청서류 접수일부터 시행토록 한 경우로 한다.
- 나. 사업부서에서 위 대가기준에 따른 적정한 가격을 확보하지 않고 심사를 요청한 경우 계약심사부서에서 부족하게 산정된 부분을 증액할 수 있다.
- 다. 원가계산방법으로 심사할 때에는 사업부서에서 제시한 계약수량·이행의 전망·이행기간·수급상황·계약조건·그밖의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부당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원가계산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심사금액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원

가산정기준의 차이 등)를 심사 결과서에 명시해야 한다. 단, 관련 법령이나 원가산정개념에 위배되는 임의적인 해석은 불가하다.

2. 계약심사 절감금액의 사용

가. 계약심사 절감금액(사업부서의 요청금액에서 심사부서의 심사금액을 뺀 차액을 말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3. 세부기준 마련

가. 안전행정부 장관이 정한 계약심사 운영요령의 내용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심사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처리규칙으로 결정할 수 있다.

나. 계약심사 처리기간은 심사부서 및 업무담당자의 여건에 따라 업무처리 규칙으로 결정한다. 결정한 내용이 없는 경우 처리기간의 산정은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다. 이 요령의 서식은 참고자료로 사도의 계약심사부서에서 별도의 서식을 정할 수 있다.

제2관 계약심사의 활성화

1. 전문성 확보 노력

가. 계약심사부서에서는 심사 우수사례 및 부진사례를 발굴 및 선정하여 사례집을 발간하거나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 계약심사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나. 계약심사부서에서는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적정성, 공법 및 규격 변경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계약심사 원가분석 자문단」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제3관 계약심사제도 시행의 예외

1. 교육행정기관의 시행여부 결정

가. 법 제3조에 따라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교육행정기관(교육청, 공립학교 등)의 경우에는 계약심사제도의 시행여부와 적용대상을 시·도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나. “가”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한 내용은 관련 법령이나 계약심사 운영요령, 예정가격 작성요령 등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서식 공사 원가심사-2>

심사결과 요약서

공사명 :

(단위 : 원)

구 분		요청내용	심사내용	증 감	비 고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부산물			
		소 계			
	노 무 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제 경 비	운 반 비			
		기계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기타경비			
		환경보전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하도급발급수수료			
소 계					
계					
일반관리비					
이 윤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도 급 액]					
관급자재비					
이 설 비					
[총공사비]					

※ 참고자료인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의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주요 심사내용

공사명 :

사업개요

위 치	
공사개요	
공사기간	

심사평가 결과

- 설계금액 : 천원
- 심사금액 : 천원
- 절 감 액 : 천원
- 절 감 륜 : - %

주요 심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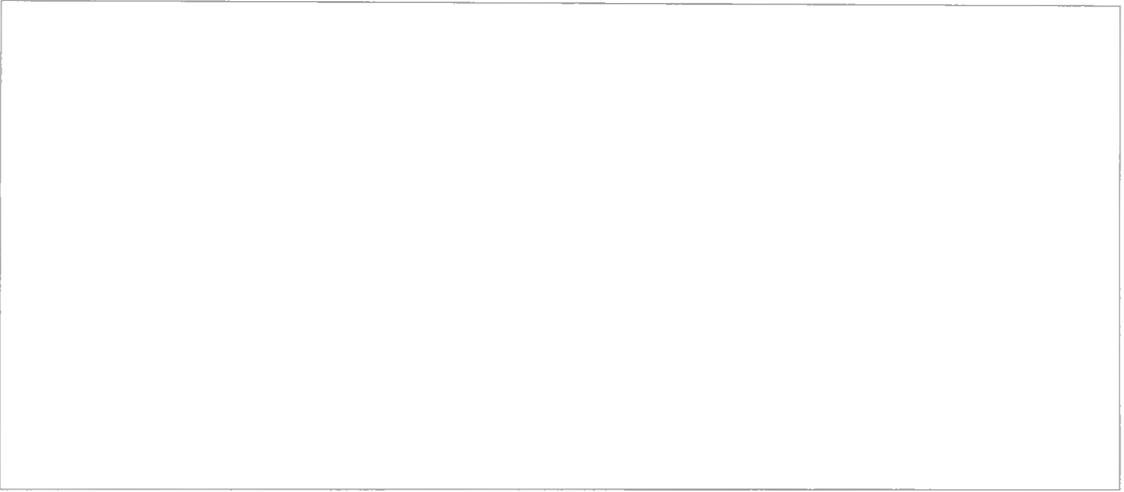
- 자재단가 조정 : 외 종
-
-
- 일위대가 조정 (외 개공종)
-
-

그 밖의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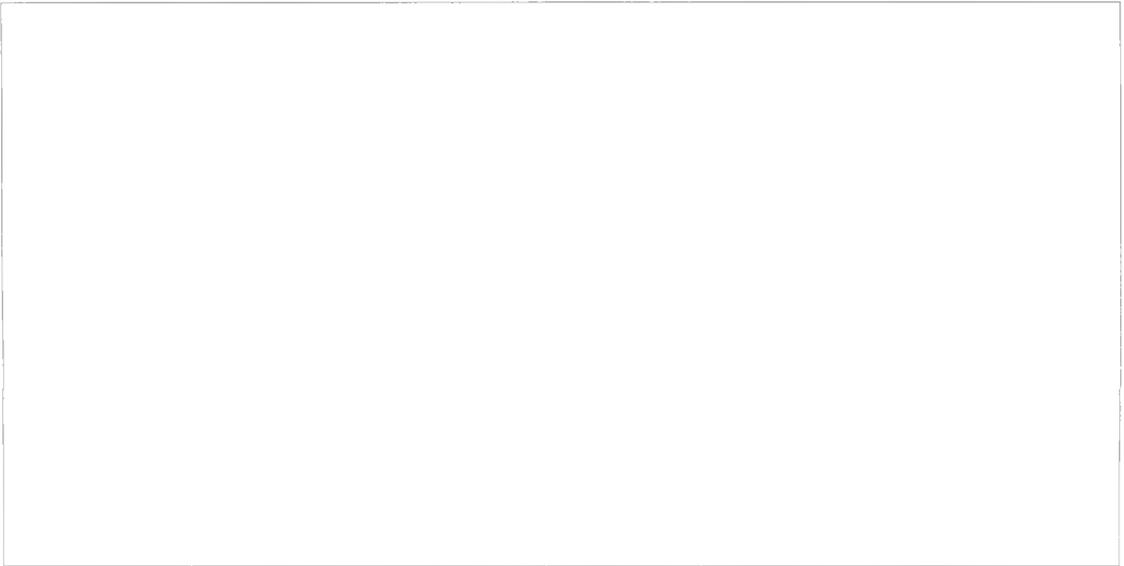
- (계약심사조건 등 심사와 관련 특별히 보고할 사항)

○○○○ 건설공사 (필요시)

▣ 위 치 도



▣ 투 시 도



< 서식 용역 원가심사-2 >

심사결과 요약서

용역명 :

(단위 : 원)

구분		요청내용	심사내용	증감	비고	
					요청(심사)	
순 공 사 원 가	재료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소 계				
	노무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제 경 비	경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연금 및 보험료				
		기타 경비				
		소 계				
		계				
		일반관리비				
이윤						
[총원가]						
부가가치세						
[총용역비]						

※ 학술연구용역의 사례이며, 일반용역의 경우는 경비 항목이 달라질 수 있음.

주요 심사내용

용역명 :

사업개요

위 치	
용역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청기관 : ◦ 용역비 : ◦ 용역내용 : ◦ 계약방법
용역기간	

심사평가 결과

- 설계금액 : 천원
- 심사금액 : 천원
- 절감액 : 천원
- 절감률 : - %

주요 심사내용

- 단가 조정 : 외 종
-
-
- 일위대가 조정 (외 개공종)
-
-

그 밖의 사항

- (계약심사조건 등 심사와 관련 특별히 보고할 사항)

<서식 물품 원가심사-1>

물품구매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과-
시행일자	. . .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 . .

담당자	팀 장	과 장		결재
협 조				

건 명		요청기관	
산출금액			
구 매 예정일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 상 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대표자 :	
기 타			
<p>◦ 첨부 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규격서 및 설명서(사양서) 1부 3. 설계내역서 1부 4.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	--

제조원가계산서

◦ 품 명 :
◦ 규 격 :

◦ 수 량 :
◦ 제조기간 :

비 목	구 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제 조 원 가	재 료 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설부산물등(△)		
		소 계		
	노 무 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경 비	전 력 비		
		수도광열비		
		운 반 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사용료		
		기 술 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료		
		지급임차료		
		보 험 료		
		복리후생비		
		보 관 비		
외주가공비				
안전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금				
폐기물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그 밖의 법정경비				
	소 계			
	일반관리비 ()%			
	이 윤 ()%			
	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			
	총 계			

<서식 물품 원가심사-3>

인쇄물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과-
시행일자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담당자					결 재
협 조					

요청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건 명					
산출금액	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상 호 : (대 표 자 :)				
계약대상	주 소 :				
업 체	전화번호 :				
<p>◦ 인쇄물내역</p> <p>1. 규 격 : 절(mm × mm)</p> <p>2. 수 량 :</p> <p>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p> <p>4. 용지종류 : 표지 (g), 내지 (g)</p> <p>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p> <p>6. 제본종류 :</p> <p>7. 특수사양 :</p> <p>8. 기 타 :</p>					
<p>◦ 첨부 서류</p> <p>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p> <p>2. 설명서(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1부</p> <p>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p> <p>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p> <p>5.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p>					

발신명의	
------	--

<서식 물품 원가심사-5>

주요 심사내용

건 명 :

개 요

품 명	
구매내역 및 금액	
계약방법	

심사평가 결과

- 구매금액 : 천원
- 심사금액 : 천원
- 절 감 액 : 천원
- 절 감 률 : - %

주요 심사내용

- 단가 조정 : 외 종
-
-

그 밖의 사항

- (계약심사조건 등 심사와 관련 특별히 보고할 사항)

<서식 설계변경 심사-1>

설계변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과-	담당자	팀 장	과 장		결 재
시행일자	. . .					
수 신 자		협 조				
접 수						
접수일자	. . .					

공 사 명		요청기관	
공사위치			
공사기간			
계약금액 (최초)			
공사개요			
설계자	상호 : 책임기술자 :	대표자 : (전화 :)	
발주자	담당자 :	(전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부 서류- 			

발신명의	
------	--

2014년 계약심사 사례집

발행인 : 대구광역시장 권 영 진

편집인 : 감사관 홍 성 주

발행일 : 2015년 1월

발행부서 : 대구광역시 감사관실 053)803-6853

편집정리 : 일상감사담당 사무관 김 덕 진

건축부문 시설6급 김 형 기

토목부문 시설6급 조 민 석

기계부문 공업6급 이 경 철

토목부문 시설6급 최 태 영

기술용역부문 시설7급 배 주 현

전기부문 공업7급 손 병 호

일반용역부문 행정6급 이 수 정

정보통신부문 전산7급 김 태 은

※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 감사관실(053-803-6853,6854)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